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3차 위원회 -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1. 개 요

- 일 시 : '24. 12. 18.(수), 14시~17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표창수상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90여명
- 주요내용
 - 농어업위 위원장 표창장 수여식(13점)
 - 안건 심의·보고(8건)
 - (심의 4건)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수입 플라스틱 조화사용 자제 권고
 - (보고 4건)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소득정보 체계 구축방안,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2024년 농어업위 규제정비 요청 과제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총괄기획팀장
14:05~14:30 (25')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 시상	
14:30~14:35 (5')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14:35~14:40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장
14:40~15:00 (20')	○ 주제발표	농어촌분과장
15:00~16:40 (100')	○ 안건 심의 및 보고 8건	분과장 및 사무국장
16:40~17:00 (2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논의 정리, 차기 본회의 일정 등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 원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	미	령
	해양수산부장관	강	도	형
	국무조정실장	방	기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협중앙회장	강	호	동
	산림조합중앙회장	최	창	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최	흥	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	만	호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	태	훈
	한국수산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	창	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	정	희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김	기	명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판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목 차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1
----------------------	---

〈주제 발표〉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5
----------------------------	---

〈심의 안건〉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19
----------------------------	----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49
-----------------------------	----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79
-------------------------	----

○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109
-----------------------------	-----

〈보고 안건〉

○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	125
---------------------------------	-----

○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143
------------------------------	-----

○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163
-----------------------------	-----

○ 2024년 농어업위 규제정비 요청 과제	189
-------------------------------	-----

제 23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회 의 명	제2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일시	2024년 9월 25일(수) 10:00 ~ 12:00
개최방식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대면회의
참석명단	위원장 : 재적 1명, <u>참석 1명</u> 당연직위원 : 재적 5명, <u>참석 3명</u> 위촉직위원 : 재적 24명, <u>참석 16명</u>

진행순서

1. 전 차 회의 결과 보고(서면)
2.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강호동 위원, 노만호 위원, 김태훈 위원)
3. 특별 주제 발표("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4. 안건 심의 및 보고
5. 폐회

상정안건

1. (심의)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2. (보고)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3. (보고)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4. (보고)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5. (보고) 임업의 활성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방안

< 결정사항 >

1. (심의)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보완하여 **추후논의**
2. (보고)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 **원안 접수**
3. (보고)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 **원안 접수**
4. (보고)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 **원안 접수**
5. (보고) 임업의 활성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방안: **원안 접수**

제 23 차 위 원 회

주 제 발 표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농산어촌 디자인(가칭 고을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I. 추진 배경
- II. 문제점
- III. 영국 VDS 사례
-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 V. 세부개선과제
-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I. 추진 배경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산어촌 디자인 필요성 증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민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
지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

농촌다움 기반 종합적 공간 디자인 계획 요구

마을 특성·지역 정체성 반영
마을 단위 지역계획 지침 수립
지역 활성화 도모

상향식 의사결정 (Bottom-up) 방식 활용 필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지역주민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주민주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확대방안 제19차 본회의 보고('23.12월), 정책연구용역 수행('24. 4 ~ 11월), 제25차 농어촌분과위원회 의결('24.11월)

3

II. 문제점

지나친 시설물 중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지역 위주의 공공디자인

- 시·도 단위 계획 수립으로 마을단위 정체성 반영 어려움
- 시설물 개선에 집중된 경향 있음
- 농산어촌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화된 디자인 다수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 농촌다움의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됨

농산어촌 특유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념 강화 필요



▲ 7형 승차대 디자인 적용사례



▲ 역상형 승차대 디자인 적용사례

OO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4

II. 문제점

주민 공감대 부족과 과잉 디자인

□ 실질적 주민 참여 및 주민 공감대 부족

- 주민협정 등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 운영 어려운 상황
- 농촌특화지구 유형 중 마을보호지구 등은 주민제안, 주민협정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 보장

□ 농산어촌 경관 과잉 디자인 및 방치 문제

- 지역 특산물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 다수
- 주변 환경 및 마을 특성과 조화롭지 않은 사례 다수
- 제작 후 관리 부족 및 방치되는 디자인 다수



주민과 주민간의 합의와 자율에 의한
지역 디자인의 합리적 관리 및 보전 필요



과잉 디자인 사례



유지관리 미흡 및 디자인 방치 사례

5

III. 영국 VDS 사례

■ 영국 VDS (Village Design Statement)

□ 영국의 주민 주도적인 마을개발설계 지침서

- 1996년 영국 정부는 모든 규모의 농촌에서 V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마을을 기준으로 한 'VDS 제작 지침'을 발표

□ 농촌 마을 고유의 성격과 아름다움 훼손 방지

- 마을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원칙을 구성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 유도

□ 제작 과정에서 전체 마을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시

- 마을 경관, 패턴, 건물 유형, 가로시설물 등 주민이 중요시 여기는 마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별 가이드라인 구성
- 지역 디자이너, 건축가, 농부, 토지 소유주 등이 참여 과정 포함

□ 제작 강제성은 없으나 자발적 참여 시 적극 지원

- 지역에 따라 보조금을 활용하거나 지역기업으로부터 후원
- 국가 차원의 계획 활용

VDS 목차

목차	주요내용
1. 제도 개요	(1-1) VDS의 정의 및 목표와 목적 (1-2) VDS에 적합한 지역계획 내용
2. 마을의 환경조건	(2-1)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요약 설명 (2-2) 오늘날 마을에 대한 요약 설명, 경제 및 미래 전망 (2-3) 관광등마을의개발압력에영향을미치는특별한고려사항
3. 경관의 특징	(3-1) 주변 농촌의 시각적 특성 (3-2) 주변 농촌과 마을 가장자리 사이의 관계 (3-3) 마을과 고대 유적, 산림 또는 자연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한 경관 특징 사이의 관계 (3-4) 경관 내 보이는 건물(농장건물 등)
4. 주거유형의 특징	(4-1) 마을의 전반적인 패턴, 뚜렷한 구역 및 배치 (4-2) 마을을 통과하는 거리와 경로의 특성 (4-3) 마을의오픈스페이스의성격및패턴더넓은농촌과의연결 (4-4) 건물과 공간의 관계
5. 마을의 건물 및 공간	(5-1) 마을 건물 유형의 뚜렷한 지역적 특성 (5-2) 건물의 높이, 규모 및 밀도 (5-3) 건물 크기, 스타일 및 유형의 혼합 (5-4) 울타리, 벽 (5-5) 독특한 마을 특징, 재료 또는 건물 세부 사항
6. 도로 및 교통	(6-1) 지역의 도로, 거리의 특징 (6-2)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주차 (6-3) 도로 시설, 설비 및 서비스

6

III. 영국 VDS 사례

VDS 적용대상별 주요 디자인 기준 예시

적용대상	주요내용	비고
경관	00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대다수의 주거지에서 마을 전경의 조망이 가능함. 마을 내 거리의 모든 구역에서 나무와 언덕이 이루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마을 내 산책로에서는 갈수록 더 넓게 보이는 전망을 제공함. 따라서, 전신주 설치시 경관 훼손여부 검토가 필요함.	
주택	마을 하부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1900년대와 그 이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주택이 근처에 이어짐. 새 건물의 경우, 차고를 지을 때 건물 측면에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함. 또한, 주민들은 스카이라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이 필요하며, 건물 변경 시에도 성격 및 재료 등이 주변 속성과 일치해야 함.	
농업시설	농촌 자연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용 건물의 변경시 반드시 보존 또는 대체 용도를 검토하고 개발여부를 결정함. 변경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자치구 의회의 전략 계획 팀과 논의 등 평가 과정이 필요함. 특히 오래된 축사 및 농장 건물과 같은 건축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은 건물의 재사용 시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	
경계 (울타리)	울타리 경계가 마을의 성격에서 중요하다고 동의함. 다양한 벽, 울타리, 산울타리가 건물의 경계로 사용됨. 오래된 건물은 산사나무, 쥐동나무 등 자생종으로 울타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함. 이러한 담과 울타리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가 제한되어야 함.	

7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농산어촌 디자인

- ☐ 농산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
- ☐ 농산어촌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디자인하는 종합적인 개념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 ☐ 농산어촌 디자인을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
- ☐ 마을 단위(읍면 포함)에서 주민 스스로 상향식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정
 - 농산어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함
 -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 조경, 건축, 도시계획,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개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8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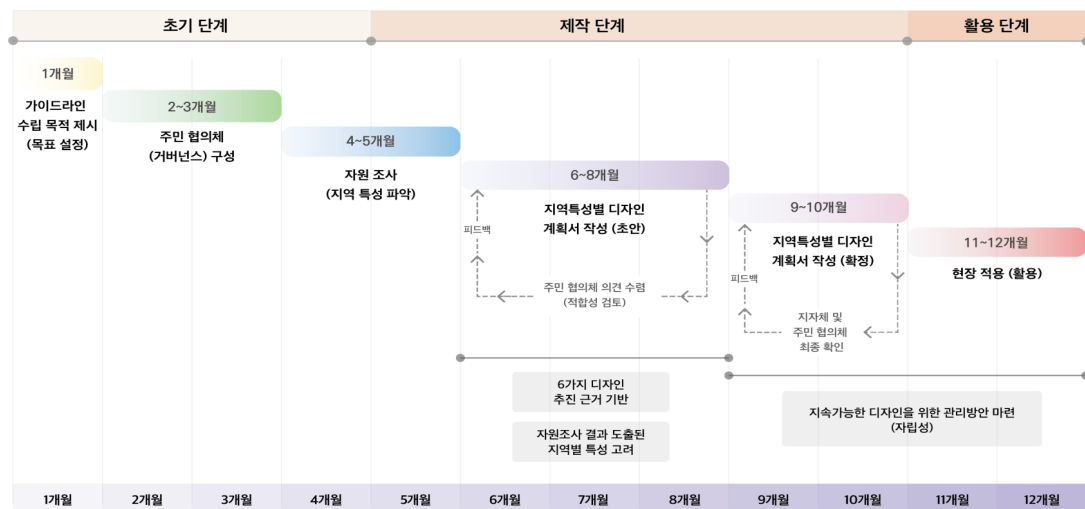
주민합의에 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도출



9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 도출과 사업연계를 위한 지역에 맞는 절차 마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절차(안)

10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Ⅰ 개별사업 또는 적용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을별 세부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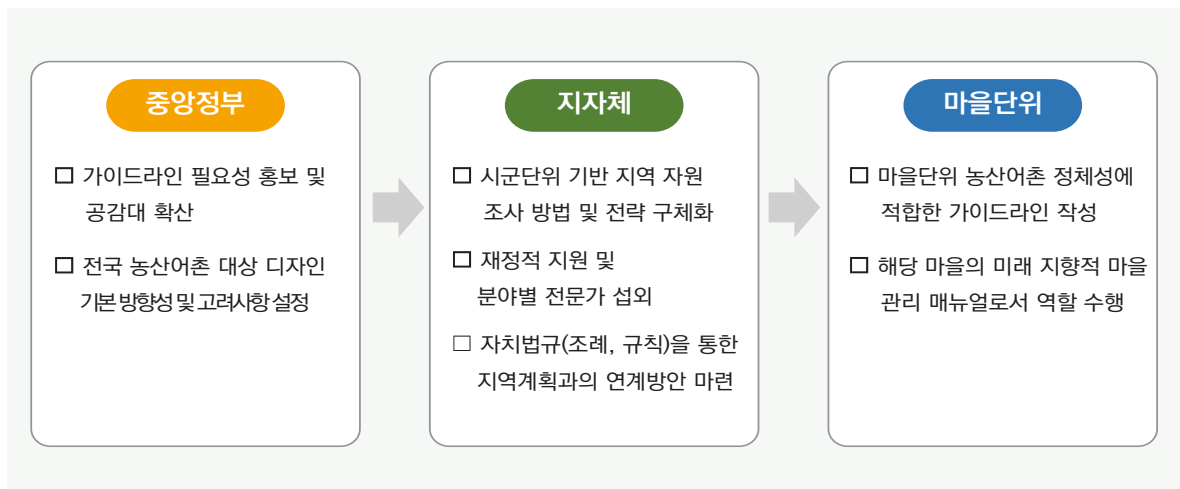
구분	목차	주요내용	구분	목차	주요내용
I. 제도개요	1.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의 정의 및 목표	III. 적용내용	(3) 산업요소	- 도로시설,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 선착장/양식장 형태(어촌), 돌레길/탐방로 형태(산촌) 등
II. 환경분석	2. 마을의 환경조건	- 마을의 지리적 배경(지형, 기후, 식생 등)	(4) 자연요소	(4) 자연요소	- 인공 호수/연못 형태, 제방 규모 등 - 갯벌 보존방안(어촌), 마을 숲 수종, 규모(산촌) 등
		- 마을의 역사적 배경(문화유산 등)			- 문화재 관리방안 및 관리시설의 규모, 형태
		- 마을의 기본정보(인구, 경제, 미래 전망 등)			- 축제 등 마을행사, 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
III. 적용내용	3. 마을 경관의 특징	- 마을 경관의 시각적 특징(구역, 건물, 주변마을 등) - 관광 등 마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고려사항	IV. 운영체계	6. 추진절차	- 주민 협의체(거버넌스) 구성 단계 세부사항 -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 세부사항 - 가이드라인 활용/개정 단계 세부사항
	4. 기본원칙	- 지속가능성, 지역성, 심미성, 자립성, 경제성, 기능성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계가능 제도
	5. 적용대상/요소				- 연계사업 관련 세부 활용방안
	(1) 총괄	- 마을 공공디자인 적용대상의 특징 및 구역/배치	V. 활용방안	7. 연계제도/사업	
	(2) 생활요소	- 주택(건물)의 높이, 규모, 밀도, 크기, 스타일, 재료 등			
		- 울타리/벽의 재료, 형태 - 지형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유지방안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목차(안)

11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Ⅰ 추진 주체별 세부 적용 방안



12

V. 세부 개선 과제

①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 디자인 DB 구축

□ 농산어촌 대상 기존 우수 디자인 사례 시상 및 DB화

-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 진행 과정 공개하여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기준에는 농촌다움 및 지역 정체성 보존, 진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등 포함
- 기존 대한민국 국토대전 참고



②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연계 적용

□ 기존 농산어촌활성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검토

- (농촌)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주민협정 운영 시 연계 검토
-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시 주민협정 운영 및 가이드라인 활용 등 검토
- (어촌, 산촌) 지자체 사업 공모 시 가이드라인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
국토부	경관사업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산림청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13

V. 세부 개선 과제

③ 주기적 자원조사를 통한 농산어촌 정체성 보존 및 관리

□ 전국 농산어촌 마을단위 자원 DB 구축

- 지자체별 마을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
-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조사(5년 단위)를 통한 농산어촌 자원 DB 구축 필요
- 자원조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행정인력 낭용 방지 및 주민 주도의 마을 농촌다움 보전 활동 수행 유도

④ 지자체 농산어촌 디자인 총괄 기능 필요

□ 지자체(시·군 단위) 농산어촌 공간계획 담당 관련 부서간 협력 필요

- 기존 공공디자인 및 경관 부서 내에서의 협력을 통한 총괄적 관리 필요
-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과정에서 사업지원 및 전문가 연결 시 업무 효율성 증대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어촌 디자인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어촌 디자인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필요

14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 영국 코츠월드 (Cotswolds)

- 영국의 중세시대 모습을 유지하며 농촌다움과 자연을 보전하고자 함
-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음
- (시사점) 자연환경, 역사현장 보전 등의 활동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15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 그리스 산토리니 (Santorini)

- 산토리니는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 섬으로, 높은 절벽 위에 존재하여 해변에서 바라보는 마을을 주요 경관 요소로 삼음
-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으로써 시각적 다양성을 조성하고, 건축물 높이, 색채 등에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짐.
- (시사점) 산토리니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의 보존의지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16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 순천 낙안읍성

- 역사문화자원에 해당하는 시설 및 공간의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 (13점의 문화재 보유)
-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특성화 유도
- (시사점) 성곽 등 유형자산 뿐 아니라 민속문화와 같은 전통적 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줌



17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 이천 산수유마을

- 산수유 군락의 꽃과 열매가 초봄, 가을의 특징적 경관을 형성
- 주민주도로 산수유를 이용한 산수유테마체험 및 산수유 꽃 축제를 진행하고, 자연성을 강조한 산수유 둘레길 등 조성
- (시사점)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마을 활성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bottom-up 방식의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시



18

VI. 우수 농산어촌 디자인 사례

■ 남해 독일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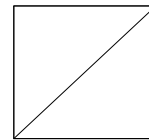
- ☐ 독일식 생활양식이 마을 내에 지속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장기 거주 영주권자 및 독일계 동포로 마을 거주자격을 제한
- ☐ 교포들은 군청이 제시한 모델집을 참고하여 본인의 주도하에 독일 건축 양식으로 주택을 완성함
- ☐ 하얀 외벽과 주황색 기와가 돋보이는 독일식 주택의 외형과 남해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유럽의 풍경을 자아냄
- ☐ (시사점) 지자체에서 방향을 제시한 이후 주민주도하에 추진하여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도 초기의 우수 모델로 활용 가능



제 23 차 위 원 회

심 의 안 건
(4 건)

공 개



의안번호	제2024-6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12. 18. (제 23 회)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창 길
제출 연월일	2024. 12. 18.	

1. 의결주문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산어촌의 지역성 소멸과 무질서한 산발적 디자인에 따라 농산어촌 마을 단위의 농촌다움 보존을 위하여 실질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농촌 디자인 규범이 필요
- 기존 지자체 위주의 하향식 지역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농산어촌 공간 계획의 필요성 대두
 -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설 및 건축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마을의 전반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의 확대 필요

3. 주요내용

- 농산어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도입방안 마련
-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을 통해 진행과정을 공개 추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등 기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검토
- 농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자원 DB 구축
- 지자체 內 농산어촌 디자인 총괄기능 수행 필요

4. 참고사항(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디자인 전문가 간담회('24. 2. 1.)

- 해외 및 국내 디자인 관련 교수, 전문가 4명

* 일본, 영국, 미국, 국내 디자인 사례 조사 및 의제 추진방향 설정

○ 정책연구용역 착수('24. 4. 19)

- 과업기간 : 24. 4. 19 ~ 11. 30(8개월), 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어촌분과위원회 워킹그룹 의견수렴('24. 4~5월, 2회)

- 정책연구용역 세부추진방향 및 의제 활용방안 등 검토

○ 워킹그룹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24. 7.23)

- 정책연구용역 추진실적 점검 및 의제 활용방안 논의

○ 농어촌분과위원회 워킹그룹 의견수렴('24. 8~11월, 2회)

- 의제 세부 개선방안 관련 논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 협의('24. 11. 15.)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참석, 해양수산부 서면 검토

○ 농어업위 제25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검토 및 조정('24. 11. 20.)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와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 부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안) 요약 1부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안) 전문 1부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요약)

- (추진배경) 농산어촌의 지역성 소멸과 무질서한 산발적 디자인에 따라 농산어촌 마을 단위의 농촌다움 보존을 위하여 실질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농촌 디자인 규범이 필요
 - 기존 지자체 위주의 하향식 지역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농산어촌 공간 계획의 필요성 대두
- (현황) 지역별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되나, 대부분 시설물에 집중되며,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어 마을별 고유 특성의 반영이 어려움
 -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설 및 건축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마을의 전반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의 확대 필요
 -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계획 수립 시 다수 발생하는 과잉 디자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마을 공간계획 필요
- (추진내용) 농산어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마련
- (세부개선방안)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①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을 통해 진행과정을 공개 추진
 -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등 기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검토
 - ③ 농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자원 DB 구축
 - ④ 지자체 內 농산어촌 디자인 총괄기능 수행 필요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29
II. 현황 및 문제점	30
1. 현 황	30
2. 문 제 점	31
III. 관련 해외 사례	32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36
V. 세부개선과제	42

[참고자료]

1.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예시	44
2. 지역별 자원조사 및 디자인 DB 구축 해외사례	46

I. 추진 배경

- 지역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여 농산어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농산어촌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아름다운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쉼터로서 기능 회복 유도
 - 농산어촌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 강화 필요
 - 마을 고유 특성과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농촌다움을 보존**하면서 매력적인 농산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공간 디자인 계획** 요구
 - 농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해외에서는 마을 단위로 지역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농산어촌 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간디자인 제도와 장치가 존재
 - 지속가능한 마을 특성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 방식의 활용** 필요
 - 현재 지역별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경우 **지자체 단위 시행**으로 인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수립되는 경우가 다수
 -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농산어촌 디자인의 지속가능성 향상**
 - 영국 VDS(Village Design Statement)* 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워크숍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의 중요성 강조
- * 영국 내 마을의 지역적 성격과 정체성이 향상되는 개발의 설계를 위한 지침서

⇒ 농산어촌 디자인을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 주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한 경관 계획 및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 시행 중이나, 농산어촌 마을단위 적용에 부적합
- 기존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광역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등의 경우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농산 어촌의 경우 마을단위 정체성 반영이 어려움

「경관계획 수립 지침」제1장 제2절

1-2-1.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계획임.

-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활용되는 시설물의 개선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제정으로 농촌다움의 보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농촌특화지구 유형 중 마을보호지구 등은 주민제안, 주민협정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문 제 점

- 공공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중심의 디자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농산어촌 특유의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념 강화 필요**
 - 도시지역 위주의 시설물 설계 개념에서 나아가 농산어촌의 정체성을 반영한 종합적 디자인 개념으로서의 전개가 필요한 상황
 - 농산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간의 구성과 활용방안을 디자인하는 전략 필요
- 농산어촌 마을단위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규범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농산어촌 경관 부문에 과잉디자인 문제 발생**
 - 주민협정, 경관협정 등 주민과 주민간의 합의와 자율에 의해 지역 디자인의 합리적 관리 및 보전을 목적으로 주민 주도로 기획·성립되고 관리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황
 - 주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특산물만을 강조하여 과도하게 직접적이거나 주변 환경 및 마을 특성과 조화롭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

<그림> 과잉디자인 사례 이미지



Ⅲ.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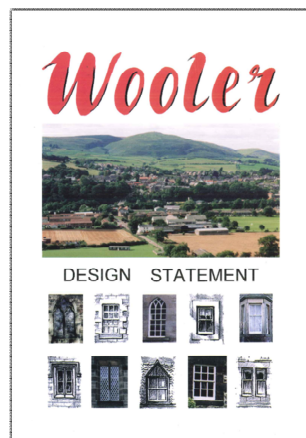
1 영국 VDS (Village Design Statement)

-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역 설계의 단순화 및 획일화가 이어졌고, 농촌 마을 고유의 성격과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 1996년 영국 정부는 모든 규모의 농촌에서 V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마을을 기준으로 한 ‘VDS 제작 지침’을 발표
 - * Village Design-Making local character count in new development (Countryside Commission, 1996)
 - VDS 제작에 있어서 전체 마을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시
 - 마을의 경관, 패턴, 건물 유형, 가로시설물 등 지역주민이 중요시 여기는 마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지역 내 디자이너, 건축가, 농부, 토지 소유주 등이 참여 과정에 포함
 - 디자인팀 마련부터 현장 적용까지 약 7~12개월의 VDS 제작 기간을 권장
 - VDS 제작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자발적 참여 시 적극 지원
 - 지역에 따라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국가 차원의 계획을 활용하거나,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
 - * 1996년 기준 VDS 제작을 위한 합리적 예산은 약 £2,500 (약 450만 원)으로 책정

<그림> 영국 VDS 예시 및 농촌 경관 사례



VDS 제작 지침 (국가 단위)



VDS 문서 예시 (마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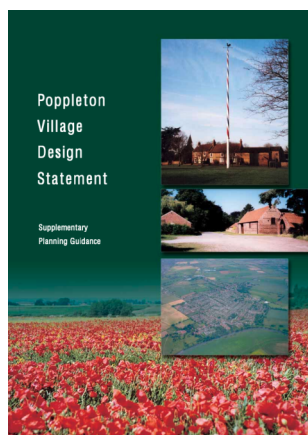
영국 농촌 경관 모습

- 지역주민에 의해 개발, 작성되고, 마을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원칙을 구성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

목차	주요내용
1. 제도 개요	(1-1) VDS의 정의 및 목표와 목적
	(1-2) VDS에 적합한 지역계획 내용
2. 마을의 환경조건	(2-1)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요약 설명
	(2-2) 오늘날 마을에 대한 요약 설명, 경제 및 미래 전망
	(2-3) 관광 등 마을의 개발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고려 사항
3. 경관의 특징	(3-1) 주변 농촌의 시각적 특성
	(3-2) 주변 농촌과 마을 가장자리 사이의 관계
	(3-3) 마을과 고대 유적, 산림 또는 자연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한 경관 특징 사이의 관계
	(3-4) 경관 내 보이는 건물(농장건물 등)
4. 주거유형의 특징	(4-1) 마을의 전반적인 패턴, 뚜렷한 구역 및 배치
	(4-2) 마을을 통과하는 거리와 경로의 특성
	(4-3) 마을의 오픈스페이스의 성격 및 패턴 더 넓은 농촌과의 연결
	(4-4) 건물과 공간의 관계
5. 마을의 건물 및 공간	(5-1) 마을 건물 유형의 뚜렷한 지역적 특성
	(5-2) 건물의 높이, 규모 및 밀도
	(5-3) 건물 크기, 스타일 및 유형의 혼합
	(5-4) 울타리, 벽
	(5-5) 독특한 마을 특징, 재료 또는 건물 세부 사항
6. 도로 및 교통	(6-1) 지역의 도로, 거리의 특징
	(6-2)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주차
	(6-3) 도로 시설, 설비 및 서비스

- 지역주민간 합의된 마을 특징을 위주로 방향성 제시

<그림> 마을 VDS 예시 (Poppleton Village Design Statement)



DESIGN GUIDELINES

2 To maintain the village's rural character/atmosphere, there should be green and open land between Poppleton and York. This is not only important for Poppleton but for York so that it remains a contained and attractive city rather than being surrounded by unsightly urban sprawl. Expansion of Poppleton outside the existing curtilage towards the Ring Road and other principal road links such as the A59 should be discouraged (parish map page 14).

('동식물상 및 생태환경' 항목 가이드라인)

농촌 지역의 성격 및 분위기의 유지를 위해, 포플턴과 요크 사이에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확장된 도시에 둘러싸이지 않고 격리되고 매력적인 도시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포플턴 뿐만 아니라 요크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Ring Road와 A59와 같은 다른 주요 도로를 향한 기존 대지 외부로의 도시 확장은 제한되어야 한다.

2

일본 마나즈루 마을 만들기 조례 ‘미의 기준’ 「美の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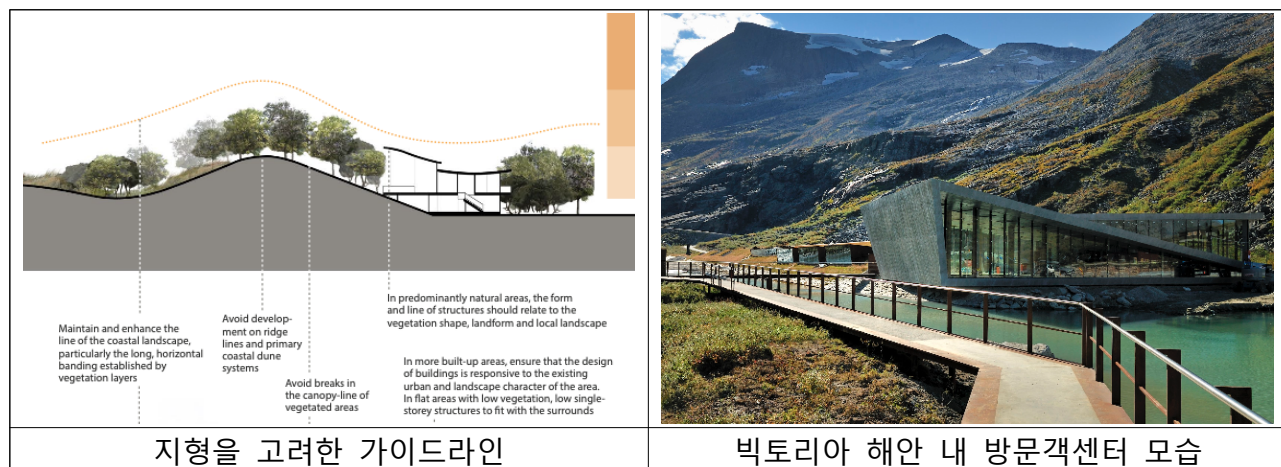
- 일본 마나즈루정(町)에서는 어촌 마을의 경관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디자인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정, 실천하여 지역 특성 보존
- 1980년대 후반, 난개발에 따른 마을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마나즈루의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TF팀을 만들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미(美)의 기준을 정하여 가이드라인 제작
 - 가이드라인 제작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
- 8가지 디자인 기본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디자인 원칙	기본원칙
1. 장소성	건축은 장소를 존중하고 경관을 지배하지 않도록 함
2. 위계성	건축은 장소의 기억을 재현하고, 마을 표현 개념을 강조
3. 휴먼스케일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이므로 건축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함
4. 조화	건축은 푸른 바다와 빛나는 녹색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마을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5. 재료	건축은 마을의 재료를 살려서 조성함
6. 장식과 예술	건축에는 장식이 필요하고, 예술과 일체화하여 마을의 독자적인 장식을 만들어 내야 함
7. 공동체	건축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해야 함
8. 경관	건축은 사람들의 전망 속에 있고, 아름다운 전망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함

●大地のフォルムから抜き出た建物、凹型 	
미의기준 휴먼스케일 가이드라인	마나즈루 마을 모습

-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안의 구조물을 계획, 설계, 건설 및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제작
 -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주변 환경의 고려와 지역 특성의 이해를 중요시하며, 해안의 환경, 사회, 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
 - 가이드라인 제작 이후 1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 구조물의 디자인 고려 요소를 포함한 15가지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정책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우수 사례 제공

고려 요소 (Fundamentals)	
1. 원주민 문화 유산 (Aboriginal Cultural Heritage)	9. 공공 오픈스페이스 (Public Open Space)
2. 해안 침식 (Coastall Processes)	10. 지역 성격 및 장소성 (Local Character and Sense of Place)
3. 지질 (Geology)	11. 지역 유산 (Herritage)
4. 지형 (Morphology)	12. 공공 접근 (Public Access)
5. 수문학 (Hydrology)	13. 기능 향상 및 적응성 (Increased Function and Adaptability)
6. 식생 및 생태 (Vegetation and Ecology)	14.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7. 기후 조건 (Climatic Condition)	15. 재료 및 마감재 (Materials and Finishes)
8. 경관 (Views)	



IV.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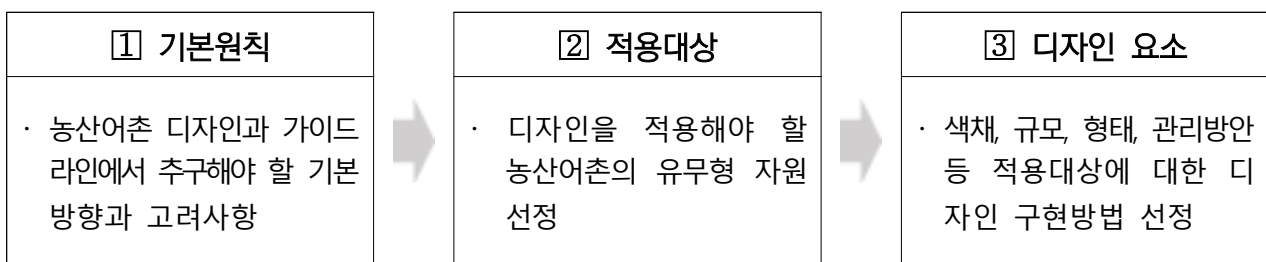
1 개념 및 추진방향

- (개념) 농산어촌 디자인을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마을 단위(읍면 포함)에서 주민 스스로 상향식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정
 - 농산어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 조경, 건축, 도시계획,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개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 농산어촌 디자인 개념

농산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농산어촌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디자인하는 종합적인 개념

- (추진방향) 지자체 또는 마을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절차를 주민합의에 의해 도출
 - (주요내용)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할 기본원칙, 적용대상,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세부기준 합의안 마련



개별사업 또는 대상(생활, 산업, 자연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을별 세부기준 마련

- (절차) 농산어촌 디자인 주요내용의 주민간 합의 절차와 개별사업 또는 대상에 대한 적용/관리 절차에 대한 기준 제시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디자인과 가이드라인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고려사항을 주민합의를 통해 제시

<표>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예시

항목	주요내용	세부 요소	사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환경 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재료 · 자연성	 지역특색 재료
지역성 (Regionality)	· 인공적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획일적 디자인은 지양함	· 기획 · 조화(맥락성) · 역사문화 · 형태, 규모(높이) · 경관(조망) · 색채, 배치	 경관조화 색채
심미성 (Aesthetic)	· 지나치게 사실적이거나 직접적인 형태로 이미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함	· 형태 · 경관(조망) · 규모(높이) · 색채 · 배치	 곡선형 산책로 배치
자립성 (Self-reliant)	·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색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 · 거버넌스 · 유지관리	 자립적 경관 유지관리
경제성 (Economic)	· 농산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간 활용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하도록 함	· 수익 · 유지관리	 체험/관광 프로그램
기능성 (Functionality)	· 농산어촌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 안전성 · 내구성 · 유니버설디자인 · 편리성	 야간 산책(보행)로

* 디자인 기본원칙 예시(안)을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재구성

□ (적용대상 및 디자인 요소) 농산어촌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 및 디자인 요소 도출

<표>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및 디자인 요소(안) 예시

적용분류	공간구분	디자인 적용대상	디자인 요소
생활요소	공통 (농촌, 산촌, 어촌)	주택(지붕, 벽체, 대문)	색채/형태
		전신주, 전선	형태/관리
		담장, 벽화	색채/형태
		교량, 철교	색채/규모/형태
		공공시설(학교, 마을회관 등)	색채/형태
		환경조형물	색채/규모/형태
		도로조명	형태/밝기
		맨홀	색채/형태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	색채/규모/형태
		안내시설(안내판, 표지판 등)	색채/형태
		주차장	-
		거리, 골목, 산책로	형태/재료
		옥외광고물	규모/형태
		스카이라인	-
산업요소	농촌	경작지(논, 밭)	작물(식채)
		경계시설(울타리, 말뚝)	색채/규모/형태
		농특산물판매장 축사, 농업창고, 정미소	색채/규모/형태
		전통농업기술	보전프로그램
	어촌	양식장	규모/형태
		어항, 선착장	색채/규모/형태
		어업 관련 시설(위판장, 수산물가공공장 등)	색채/규모/형태
		등대	색채/규모/형태
	산촌	목초지	관리
		둘레길, 탐방로	규모/형태/관리
		지역 특화림	수종(지역 연관성)
	어촌, 산촌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자연요소	공통 (농촌, 산촌, 어촌)	하천, 호수, 연못	형태(자연형/인공형)
		제방	색채/규모/형태
		가로수	수종(색채, 형태)
	어촌	해안사구	유지관리
		해안식생	수종/생태계보전
		해안방풍림, 마을숲	수종/규모
		갯벌	생태계보전
	산촌	방풍림, 마을숲	수종/규모
		야생화군락지	수종(색채/형태)
역사문화요소	공통 (농촌, 산촌, 어촌)	문화재(사적, 유적 등)	관리방안
		관광시설(전시관 등)	색채/규모/형태
		안내시설(안내판, 표지판 등)	색채/형태
		축제 등 마을행사*	기획(주제)
		공동체 문화*	-

* 지역특성과 디자인 기본원칙에 맞게 적용대상 및 디자인 요소를 선택/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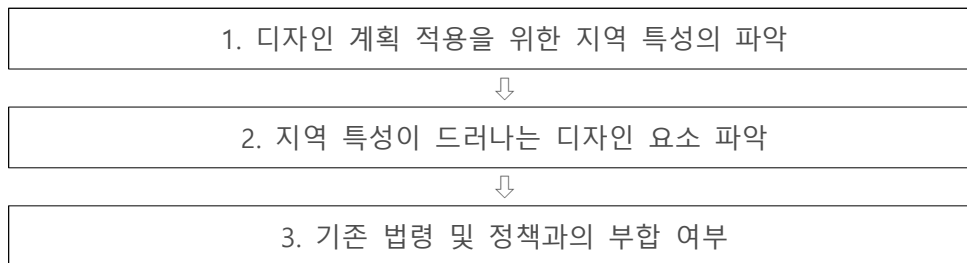
<표>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목차 예시

구분	목차	주요내용
I. 제도개요	1.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의 정의 및 목표
II. 환경분석	2. 마을의 환경조건	- 마을의 지리적 배경(지형, 기후, 식생 등) - 마을의 역사적 배경(문화유산 등) - 마을의 기본정보(인구, 경제, 미래 전망 등)
	3. 마을 경관의 특징	- 마을 경관의 시각적 특징(구역, 건물, 주변마을 등) - 관광 등 마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고려 사항
III. 적용내용	4. 기본원칙	지속가능성, 지역성, 심미성, 자립성, 경제성, 기능성
	5. 적용대상/요소	
	(1) 총괄	마을 디자인 적용대상의 특징 및 구역/배치
	(2) 생활요소	주택(건물)의 높이, 규모, 밀도, 크기, 스타일, 재료 등
		울타리/벽의 재료, 형태
		지형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유지방안
	(3) 산업요소	도로시설,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선착장/양식장 형태(어촌), 둘레길/탐방로 형태(산촌) 등
	(4) 자연요소	인공 호수/연못 형태, 제방 규모 등
		갯벌 보존방안(어촌), 마을 숲 수종, 규모(산촌) 등
IV. 운영체계	6. 추진절차	문화재 관리방안 및 관리시설의 규모, 형태
		축제 등 마을행사, 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
V. 활용방안	7. 연계제도/사업	주민 협의체(거버넌스) 구성 단계 세부사항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 세부사항
		가이드라인 활용/개정 단계 세부사항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계가능 제도
		연계사업 관련 세부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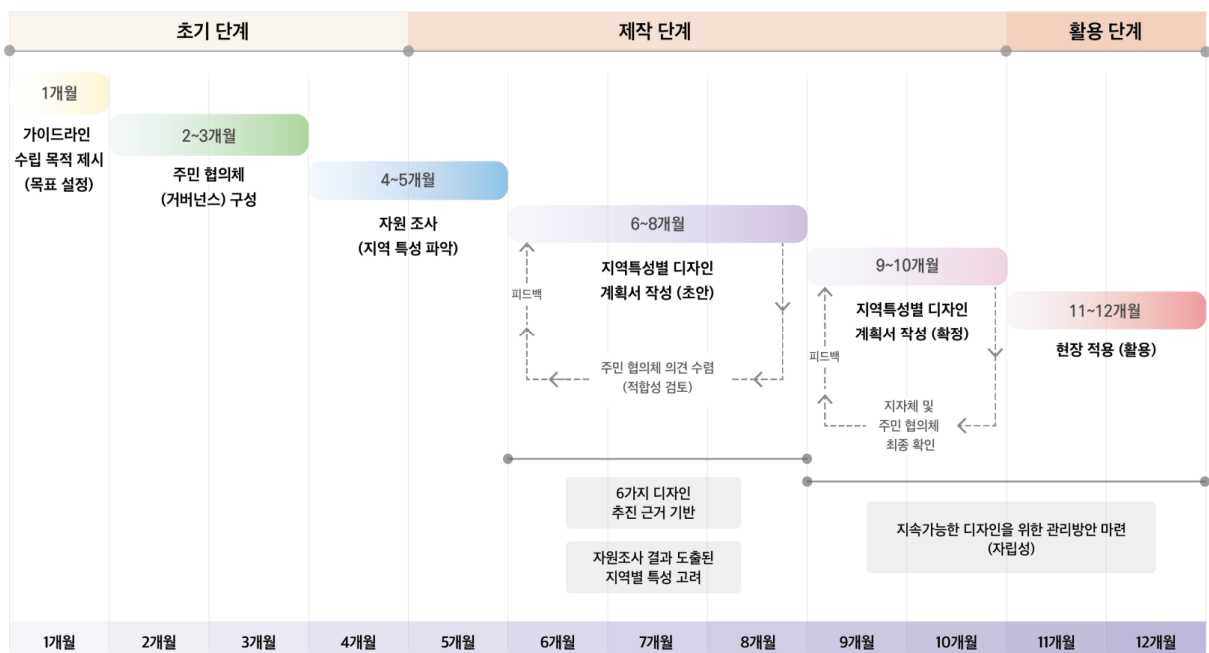
3 추진절차 및 체계(안)

- 지역에 맞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은 크게 초기, 제작, 활용의 세 단계로 나뉘며, ‘목표설정,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성 파악, 계획서 초안 작성, 계획서 확정, 활용’의 6가지 과정으로 구성
- 지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별 디자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요소를 도출해야 함

<표> 디자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요소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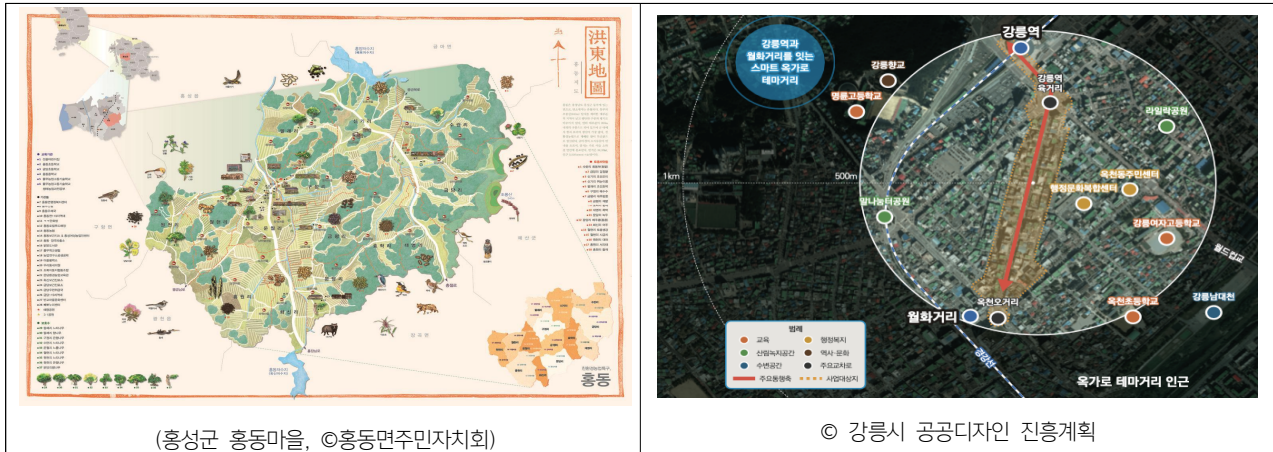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은 약 12개월을 권장 기간으로 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거버넌스 및 주민협의체 역할을 담보로 하고 실제 체감하는 지역고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 지역의 공간적, 시각적 특성의 표현을 위한 사진, 그림, 도면, 지도 등 시각 자료 활용

<그림>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각자료 활용 예시



4 추진주체별 세부적용방안

- (중앙정부) 마을단위 농산어촌 디자인의 필요성 홍보 및 공감대를 확산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농산어촌 대상 디자인의 기본 방향성 및 고려사항을 설정하여 제시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행정인력 및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 (지자체) 시·군 단위 기반에서의 지역 특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자원 조사 방법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마을단위 디자인 규범 제작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주민 워크숍 등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분야별(경관 등) 전문가 섭외 및 지원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마을단위) 마을단위 농산어촌 정체성 특성화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농산어촌 해당지역의 중·장기 마을관리 매뉴얼로서의 역할 수행
 - 마을단위 디자인 규범 채택 후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 유지관리 매뉴얼로서 활용 가능

V. 세부개선 과제

1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 디자인 DB 구축

-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을 통해 진행 과정을 공개하여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 대상 기존 우수 디자인 사례를 시상 및 DB화
-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기준을 농촌다움 및 지역 정체성 보존, 진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를 포함

2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연계 적용

- 기존 농산어촌활성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검토
- (농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등 3개 사업 연계 검토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주민협정 운영시 연계 검토 필요
 -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협정 운영시 연계검토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시 주민협정 운영 및 가이드라인 활용 등 검토
- (어촌, 산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등
 - 지자체 사업 공모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등 인센티브 검토

<그림>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연계 방안

부처명	사업명	연계방안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및 주민협정 운영시 연계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	- 농산어촌 우수 디자인 및 지역 자원 DB 구축
국토부	경관사업	-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운영시 연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농산어촌 우수 디자인 및 지역 자원 DB 구축
산림청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적용 인센티브 검토 등

3 주기적 자원조사를 통한 농산어촌 정체성 보존 및 관리

- 농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농산어촌 마을단위의 자원 DB 구축 필요
 - 기존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촌다움 자원 DB의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해 조사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지점별 조사 정도의 차이가 커 지자체별 마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영국의 LCA(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Magic Map의 개념을 적용하여 농산어촌 경관에 대한 조사 진행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조사(5년 단위)를 통한 농산어촌 자원 DB 구축 필요
 - 자원조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행정인력 남용 방지 및 주민 주도의 마을 농촌다움 보존 활동 수행 유도

4 지자체 농산어촌 디자인 총괄 기능 필요

- 기존 농산어촌 공간계획 담당 지자체(시·군 단위) 부서는 공공디자인, 경관 등 관련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부서간 협력 필요
 - 기존 공공디자인 및 경관 부서 내에서의 협력을 통한 총괄적 관리 필요
 -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과정에서 사업지원 및 전문가 연결 시 업무 효율성 증대
-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어촌 디자인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필요
 - 관련 부처에서 농산어촌 디자인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제도 정착을 위해 전파, 확산

참고 1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 영국 사례 참조 적용대상별 세부기준 예시

적용대상	주요내용	비고
경관	00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대다수의 주거지에서 마을 전경의 조망이 가능함. 마을 내 거의 모든 구역에서 나무와 언덕이 이루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마을 내 산책로에서는 갈수록 더 넓게 보이는 전망을 제공함. 따라서, 전신주 설치시 경관 훼손여부 검토가 필요함.	
주택	마을 하부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1900년대와 그 이전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주택이 근처에 이어짐. 새 건물의 경우, 차고를 지을 때 건물 측면에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함. 또한, 주민들은 스카이라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이 필요하며, 건물 변경 시에도 성격 및 재료 등이 주변 속성과 일치해야 함.	
농업시설	농촌 자연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용 건물의 변경시 반드시 보존 또는 대체 용도를 검토하고 개발여부를 결정함. 변경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자치구 의회의 전략 계획 팀과 논의 등 평가 과정이 필요함. 특히 오래된 축사 및 농장 건물과 같은 건축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은 건물의 재사용 시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	
경계 (울타리)	울타리 경계가 마을의 성격에서 중요하다고 동의함. 다양한 벽, 울타리, 산울타리가 건물의 경계로 사용됨. 오래된 건물은 산사나무, 쥐똥나무 등 자생종으로 울타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함. 이러한 담과 울타리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가 제한되어야 함. 또한, 마을경계의 관문과 차도가 마을의 시골 자연 측면과 일치해야 함.	
도로	□□마을의 도로는 마을의 매력을 더해줌. 예를 들어, 마을의 접근로에는 간선도로와 보도 사이 성목과 풀이 우거진 경계가 있으며, 동서남북마다 경치 좋은 길이 뻗어져 있음. 그러나 마을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좁은 도로 및 대학과 공원의 확장으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시각적으로 덜 거슬리고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농장 차량이나 버스와 같은 무거운 차량은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며,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해 대학 측 도로의 방향 개선이 요구됨.	

□ 일본 사례 참조 적용대상별 세부기준 예시

적용대상	주요내용	비고
스카이라인	·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곳은 시설의 입지로 선택하지 않는다. · 주요 뷰 포인트 및 주요 관광 루트에서 바라볼 때 스카이라인을 차단하는 위치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스카이라인 부근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조경식재	· 액센트용으로 식재하기, 입구 장식하기, 꽃으로 흥미 유발 대상 만들기, 식재로 가리기 등 원하는 효과에 맞춰 식물을 선정한다. · 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는 마을에서 흥미 유발 대상 시설을 장식할 경우에는 식재를 분위기 고무용 정도로만 활용하고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표지판	· 통일성을 위해 본체의 소재·색채·디자인, 표시부의 소재·색채·디자인·서체 등을 일치시킨다. ·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표지판은 간결하게 하고, 투박한 인상을 주지 않는 크기와 디자인을 선택한다. · 표지판의 기반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주차장	· 지형적으로 움푹 들어간 곳, 숲 속, 건축물 뒤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식재, 마운드와 조합한 식재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이 눈에 띄지 않게 한다. · 흥미 유발 대상 건축물의 앞에 설치하지 않는다. · 넓은 주차장은 식재로 분절화하여, 단조롭고 밋밋한 인상을 억제한다.	
수로	· 경작지의 수로는 식물이 우거진 이미지를 주도록 조성한다. ·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게 한다. · 조경 시에는 비탈면 등에 들꽃이 자연스럽게 피도록 식재한다.	

□ 영국 LCA(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 영국의 경관 특성 평가 제도로써, 국가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지자체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5년마다 경관 특성 평가 실시
- 영국 전역의 다양한 경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여 경관 보존 및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가능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기반으로 경관을 보존 및 개선하는 방법을 도출하며, 경관 특성에 기여하는 특징 및 요소의 조합을 식별하여 지역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영국 Magic map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2002년 농촌 지역을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이 보유 및 생산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온라인 기반의 지리정보체계 시스템인 Magic map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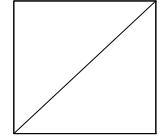
* DEFRA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

- Magic map의 정보는 영국의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여 개의 데이터 셋을 무료로 제공
-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를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컨설팅 등 농산어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DB에 접속하거나 정보 활용

* 영국의 환경, 식품 및 농촌부에서 후원하는 비부처 공공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21 E-mail : nicengirl@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4-7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12. 18. (제 23 회)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한 호
제출 연월일	2024. 12. 18.	

1. 의결주문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으로 국토 면적의 한계와 급격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더욱이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농지 이용계획에서 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관리 추진 원칙과 방향을 재정비하고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주도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3. 주요내용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로 농지 활용 도모
 -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을 통한 농지 이용 활성화
 - 고령농 농지 등의 세대 계승 촉진
 - (향후 과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업구조혁신 법적 기반 구축
 - 규제 중심의 현행 농지법에서 후대 영농세대를 포괄하는 농지 이용 중심의 관리 계획 방안 검토

4. 참고사항(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워킹그룹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4. 5 ~ 11월 / 5회)

○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24. 10. 17.)

- 들녘공동경영체에 의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주제)

* 전북대학교 조가옥 교수 주제발표, 12명

○ 농어업위 공동주관 정책 심포지엄 개최(‘24. 10. 30.)

-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 농지 이용 효율화의 과제(주제)

* GSnJ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 주제발표, 150여명

○ 연구용역 추진(‘24. 4 ~ 12월) / 사)농정연구센터

○ 농어업위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4. 11. 18.)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와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요약 1부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전문 1부

농지의 효율적 이용 · 관리 구축 방향(요약)

□ 추진배경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농업 생산방식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맞는 농지 보전·관리 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 자원으로서 농지의 보전, 이용을 체계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중장기 농지 정책 방향

- 규제 중심의 현행 농지법에서 이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후대 영농세대를 포괄하는 농지 관리 계획 방안 검토

□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구축 방향 세부과제

○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농지 이용 모델 구축
- 지역 여건과 품목 특성에 맞는 농지이용증진 지구 모델 마련을 통해 권역 단위 농지 집적 및 공동농업경영으로 규모화 영농 실현

○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 고령농과 경작농지 인접 농지 등의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활용 증진
- 장기적으로는 농업인 간 임대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농지의 세대 계승 촉진

-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청년농과 후계농으로 이전되도록 맞춤형 지원
- 지자체 주도의 농지 세대 계승 정책 추진 도입
- 후대 경작 농업인과 현실을 반영한 세제 개편으로 농지세대 이전 촉진

농지의 효율적 이용 · 관리 구축 방향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59
----------------	----

II. 효율적인 농지 이용 · 관리를 위한 방안	60
----------------------------------	----

1.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60
-----------------------	----

2.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63
-----------------------	----

3. 농지의 세대 계승 촉진	65
-----------------------	----

III. 향후 검토 과제	69
---------------------	----

[참고자료]

1. 농지이용증진사업 법적 조항	70
-------------------------	----

2. 농지법의 농지이용증진사업 규정	71
---------------------------	----

3. 농지 임대차 예외적 허용범위	72
--------------------------	----

4. 농지 임대차 제도 개정 연혁	73
--------------------------	----

5. 농지 현황 자료	74
-------------------	----

6. 지자체 사례(충남)	75
---------------------	----

7. 해외 사례 (프랑스, 일본)	76
--------------------------	----

I. 추진 배경

- (농지의 중요성)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임
 - 국토 면적의 한계와 급격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곡물자급률은 21.2%(2022년 기준)로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농지 보전과 활용은 농지 증진의 균형적 접근이 필수적인 과제
 -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등 생물 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적 저장소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
- (농업 구조 변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농업 생산방식의 다양화·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맞는 농지 관리 체계 반영 필요
 -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유휴농지가 증가
 - * 65세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 52.6%(2023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이용구조는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업 경쟁력 약화 초래
- (관리 체계 전환) 농지 이용계획에서 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관리 추진 원칙과 방향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농지관리계획은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효과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에 대한 계획이 결합된 추진 체계 필요
 - 지자체의 지역단위 농지전용 허가 등 제한적 역할을 넘어 지역 맞춤형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지관리 체계 마련

Ⅱ.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를 위한 방안

- ▶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지 관리 체계 방향 제시
- ▶ 소유·규제 중심에서 활용·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로 농지 활용 도모

□ 필요성

-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경영방식도 변화
 - 농기계 보급과 농업기술 발전으로 농업경영체 당 경작 가능면적 증가
 - * 벼농사 기계화율 99%에 달해 연간 20일 작업만으로 경운정지(트렉터) 30ha, 모내기(이앙기) 35ha, 수확(콤바인) 36ha 등 30ha 이상 경작 가능
 - 농업노동의 농기계 대체, 개별 경영 한계 등으로 농업 현장에서 광범위한 위탁영농 진행 중
 - * 논벼의 경우 농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위탁을 하지 않는 농가는 1% 미만
- 그러나, 소규모 분산된 농지 소유와 이용 환경에서는 새로운 경영 방식의 충분한 활용과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한계
 - 영세, 분산, 파편화된 농지와 필지 단위 농지관리가 기계화와 영농 규모화로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효과를 억제
- 소유자·이용자별로 세분화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필요
 - 농촌 인력 해소, 생산비 절감 해결, 쌀 과잉·식량자급률 문제 대응

□ 이용증진사업 개요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영규모 확대로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농지법에 이용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천 미흡
 - 농지이용계획 수립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 한계, 농지이용증진사업 개념 및 추진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함
 - 2024년 1월 농지법 개정(2025.1.24.시행)에 따라 농지이용계획 없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

○ 이용증진사업 추진 시 이점

- 농지 효율적 이용과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임대차 및 사용대차, 위탁영농 등 농지법상 특례 조치 활용 가능
- 시·군 단위 농지이용계획 폐지로, 단지·지구 단위의 구체적인 농지 이용 시행 계획 수립만으로 관련 사업 추진

▶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 촉진, 농지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설정 촉진, 위탁경영 촉진, 농업인/농업 법인이 농지를 공동이용 또는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 개선 가능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부채지주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유도

□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 농지와 경영체를 결합할 수 있는 농지관리계획 수립과 모델 마련

-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농지이용증진사업’이 구체적이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가칭)농지이용증진특화지구 지정 및 이용증진 모델 마련
- (정 부) 농지이용증진사업 기본 가이드라인과 사업 방향 제시
농업 생산기반 정비 우선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인센티브 등 유인책 마련 검토
- (지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모델 설계, 기존사업과 연계한(공동경영체 사업 등) 특화지구 지정 운영, 농지이용증진 사업의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지도·홍보 등
- (농지은행)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 농지 정보 제공 등 추진

○ 식량작물·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등 기존사업과 연계하고 지역별
농지 규모화와 중장기 영농계획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 마련

○ 농작업의 기계화, 고령농의 농작업 위탁 보편화 등 현장에 맞는
농업 경영모델 마련

- 지역 특성(평야지, 중산간지)과 주요 재배 작물 등을 반영한 작부체계 적용

- ▶ 논 이용 식량작물, 논 이용 조미채소(양파, 마늘), 사료작물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 선택
- ▶ 이모작(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통한 소득증대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 도모

○ 참여 농가·조직 운영 등 사업시행자 역할 명확화하고 시행주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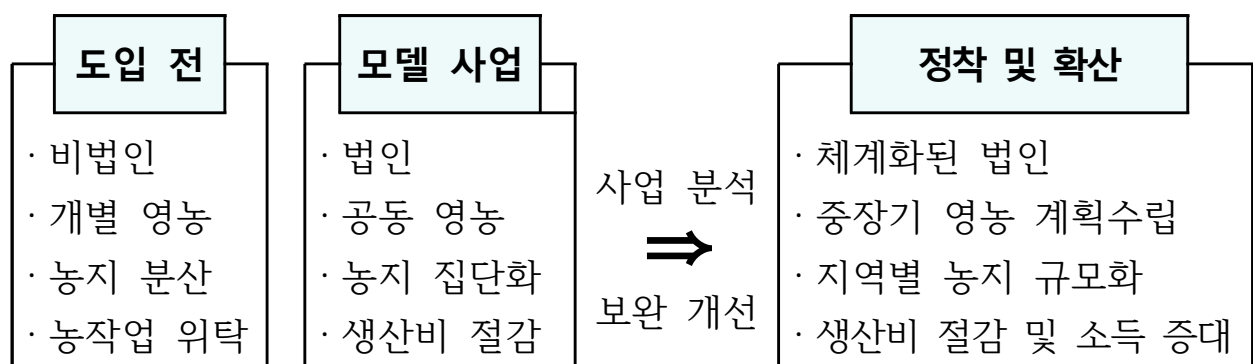
- 사업 시행주체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 등록조직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제안 검토

[농지법시행령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개정]

- ▶ (현 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 ▶ (개정안)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공동농업경영체

○ 권역별 특화지구에서 모델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분석 및 평가를
거쳐 지역 맞춤형 우수모델사업을 전국으로 확산

- 모델사업을 통해, 직불제 운영방식, 상속 등 비농업인의 농지 활용
규제 등 추가 검토 필요



2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을 통한 농지 이용 활성화

□ 임대차 제도 현황

- 헌법(제121조)과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농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농지법에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

▶ 헌법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농지 소작 제도는 금지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법 제23조 예외사항

- ① 농지법 시행 전인 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② 상속 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하면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
 - ③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 *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9개 항목의 예외 사항을 세분화하면 22개의 예외(허용) 사항이 존재

- 상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증가, 농업 현장의 필요에 의해 관행적 임대차가 광범위하게 증가

* 임차 농가 비중 50.0%, 임차 농지 비율 46.9%(농가경제조사, 2022)

□ 농지 임대차 개선 필요성

- 농장단위 경영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상속되어 농지 소유·임차면적이 소규모 단위로 쪼개지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도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대하고 있어 소규모 단위의 경작지가 양산되는 상황 발생
- 현재 비농업인 소유 농지(이농·상속)의 임대차는 자유로운 반면 농업인 소유 농지는 임대차가 금지되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농지 이용의 비효율 발생

- 농업인의 위탁 영농, 법테두리를 벗어난 임대차 관행 등 현실 반영 필요
 - 고령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 등은 농작업의 대부분을 위탁 형태로 영농 유지
 - 농업인 간 영농경작상 편의를 위해 소유농지를 서로 교차하여 임대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 및 규율 불가능
- 농지 이용 효율화·집적화와 청년농·후계농 등의 필요 농지 공급 등을 위해 농지 임대차 활성화 필요

□ 개선방향

- 농업인간 농지 임대차 허용 확대를 통해 농지 유동성을 높이고, 농지 이용의 규모화·집적화로 농업생산 효율화 촉진하는 환경 조성
 - 다만, 농업인간 임대차 허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농업인의 정의와 자격 기준’의 명확한 확립 등 여건 조성이 필요
- 농업인의 정의나 자격기준의 명확화 확립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 농촌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

□ 임대차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농업인간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 ① 일정 연령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 * 은퇴 희망 고령농의 농지를 매각·증여 이외에도 임대차를 통하여 이용 촉진
- ②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 *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지 규모화로 경영 생산성 향상
- ③ 영농여건 불리지역, 한계농지, 인구감소지역의 임대차 허용 확대
 - * 농업의 융복합 촉진을 통한 농지 이용률 제고와 휴경농지 최소화
- ④ 농업생산법인의 생산 효율성 제고와 규모화를 위해 임차 허용
 - * 들녘·마을별 공동영농 목적으로 하는 생산형 농업 법인의 농지 집적 및 이용 활성 도모로 규모화 영농이 가능한 환경 조성

《농업인간 농지 임대차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인의 자격 기준 명확화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이농·상속 비농업인인 경우 1ha 미만 정상 소유자,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는 허용하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 주말체험 목적 도시민 소유 농지는 임대에서 제외
- 일정 규모 이상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귀농인, 청년농 등을 위해 예비농업인제 도입 필요

○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임대차 정보관리 강화

-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의 현장 정착
- 농지 임대차 전체 정보의 농지은행 관리 법제화, 이상 거래 및 부적정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 임대차 계약 조정·협의권자로서 농지은행 역할 강화 및 체계구축

- 농지법(제24조의 3) 임대차 계약 조정 제도의 확장, 실질화를 위해 시군구와 농지은행을 임대차 조정제도의 운영 주체화
- 임대차 계약 조정제도의 내용적 범위를 농지관리계획,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 검토, 연접농지 임대차 우선협의·조정 등으로 확장

○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임대물건 및 임차료 정보 제공, 최소 임대차 기간 확대, 임대차 의무 신고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 등 필요

3 고령농 농지 등의 세대 계승 촉진

□ 현 황

- '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농 소유의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8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고령농 위주의 농지 소유 구조는 농지의 자산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농지의 세대계승과 이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분할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분산화,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비중 확대, 그에 따른 청년농·신규농의 농지 확보 어려움 등 문제
- 주요국들은 미래 경작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농지를 포함한 농업자원과 영농의 승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승계농 및 신규농의 확보는 주요 국가들의 공통 과제이며, 청년농 직불과 농업법인·조세 등으로 유입과 안정 정착 지원

[영농승계 및 경영 규모화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프랑스의 가족경영법인(GAEC)제도]

- ▶ 프랑스의 독특한 농업법인 구조인 GAEC는 세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 농업인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농업 생산활동만 할 수 있음. 주로 가족 구성원이 법인을 구성하여 경영승계에 활용
- ▶ 가족 구성원별 농업자산의 전부, 일부 출자 가능. 수익배분은 구성원 간 균등 배분 원칙 (Transparency Principle) 적용함으로써 직불금 수급 등 혜택 부여

-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산으로서의 농지 소유 욕구와 영농 유지에 따른 지원·혜택이 크기 때문에 원활한 영농 세대계승 미흡
 - 은퇴·이양이 진행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청년·후계 세대로 농지 이전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 필요성

- 청년농·신규농에게 농업 경영의 필수 생산요소인 ‘농지’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영농진입의 장벽으로 작용
 - 지역의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접근 곤란
 -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농에 적합한 적정농지의 확보 어려움
 - 장기 농업경영계획 미비와 영농경영의 기술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부른 농지 매입으로 재무적 위험에 처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향

- (맞춤지원) 청년농·후계농의 농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계농과 신규농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법·제도와 정보 제공 체계 마련

- [승계농] 선대-후대간 공동농업경영 제도를 확립, 필요시 농지 사전 증여·양도를 통해 점진적인 독립적 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단위의 “영농상속” 활성화 지원

[(가칭)선대-후대간 공동농업경영제도 도입 방안]

- ▶ 청년·후계농 등 기존 선대의 농업경영과 분리하여 개별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야 지원하는 현행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
- ▶ 승계농의 경우 가족농업경영체에서 영농진입 단계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경영이양과 영농상속으로 이어지도록 함
- ▶ 가족농업경영체 신청·등록, 공동경영협약(안)을 전제로 청년·승계농 우대 직불(안), 농지·농업자산 양도·증여에 대한 감면·면제 등 추진
-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방안(농어업위 의제)에서 논의된 은퇴경영체(또는 은퇴농업인) 제도와 연계 건강보험료 감면·교통지원·농업인 국민연금 등 농업인 복지 지원대상자로 법적 지위 혜택 유지

- [신규농] ^(가칭)청년농 농지청약제를 도입하여 5년~10년(안) 기간을 둔 농지 구입 재원을 마련하고, 선임대-후매도 등 희망 농지 접근성 강화
- 임차가 가능한 60세(5년자경 조건) 또는 일정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 정보를 매년 집계, 갱신 기초 통계자료(읍·면, 시·군 단위 대상 필지 수, 면적 등)를 지역 거주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 등에게 정보 제공
- 청년농·신규농이 결합된 생산 농업법인 등에 농지 임차, 위탁영농을 허용하여 농지의 세대 계승 도모

[(가칭)청년농 농지청약제(안)]

- ▶ 농지 매입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용자 지원도 한도가 있어 중장기적인 규모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 (가칭)청년농 농지청약제는 영농·정착 단계에 이른 청년·후계농에게 지역내 농지 우선 매입권을 청약하고, 5~10년간 매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
- ▶ 연납·분기납·월납 등 청약부금 납입방식 다양화와 이자율 우대를 시행하고, 농지 정보 제공 및 청약기간 중 희망농지 매입자금에 대한 추가 저율 융자 제공 등 지원

○ (특화지원) 지자체 주도의 청년·후계농으로의 농지 이전 추진

- 농지 수요는 지역·품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 감안, 전국의 평균적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각 지역·품목에 맞는 지원책 마련
- 청년·후계농·신규농들이 임대차를 중심으로 농지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지원책 마련

[특화지원 예시]

- ▶ 과수원 세대계승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지원
- ▶ 청년세대 위탁 농작업 조직 활성화 지원
- ▶ 영농여건 불리 농지 활용 청년농 융복합산업화 지원 등

○ (세제개편) 농지관련 조세 감면이 후속의 농업·영농 희망자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편 협의

- 현행 8년 이상 재촌·자경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와 달리 불법임대차, 위장경작의 관행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되고 있어, 청년·후계농·신규농 등 실경작 농업인에게 '세대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요건으로 양도세 개편
 - 규모화된 법인의 영농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300~600억원)에 농업이 포함되도록 상속세제 개편
 - 농장단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농지이외에 건물, 생물 자산 등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증액 등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 * 현재의 증여세 세액 감면 한도 1억원 적용 시 공제한도는 5.8억원 수준

Ⅲ. 향후 검토 과제

□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업구조혁신 법적 기반 재구축 검토

- 농지 이용 중심 제도·체계화와 이용 촉진을 위해 법률 개편 구상
- 규제 중심의 농지법에서 분리, 이용 중심 내용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 ① 「농지법」의 농지이용증진사업, ②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지의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농지은행 관련 사업, ④ 「농어업경영체법」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이외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과 경영규모화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포괄·통합

□ 미래 영농세대를 포괄하는 농지관리 계획 마련

- 농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농지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지관리 목표 설정
- 농촌재생 및 재구조화에 따른 농촌공간 혁신과 연계, 농지 분산을 막고 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와 경영체가 결합된 권역 단위 계획형 농업 환경 조성

참고 1

농지이용증진사업 법적 조항

시행자 (제15조)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② 한국농어촌공사 ③「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④「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상의 업연초생산협동조합 ⑤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규약) 을 정하고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시행요건 (제16조)	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②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 이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③ 기계화·시설 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유통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 절감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7조)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입안) →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확정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이외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입안) →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제출(필요시 보완) 승인 → 확정
시행계획 포함사항 (제17조)	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구역 ②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③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④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⑤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8조)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부(部)령에 따라 고시(告示)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②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농지 소유권/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登記)를 촉탁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적용 배제
지원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指導)와 주선(周旋)을 하며, 예산 범위에서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

- 현행 농지법 제15조~19조는 농지이용증진사업 관련 실시 규정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제15조(시행자), 제16조(시행요건), 제17조(시행계획 수립절차, 시행계획 포함사항), 제18조(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지원)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함(제15조)
 -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
 - 농지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 설정 촉진**
 - **위탁경영을 촉진**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이용 또는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 경영을 개선**
- 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대상지는 농지법 상의 **특례조치 규정 적용을 받음**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농지 소유 허용 [제6조(농지소유제한)의 예외 적용]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부재지주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유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의 허용]

참고 3

농지 임대차 예외적 허용 범위

1.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부칙 제4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
(1만㎡ 초과되는 면적을 개인 간 임대할 경우 초과면적은 처분대상임)
4.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은 농지
6.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농지 등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 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8.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면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가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7.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함)
18.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9.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20.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21.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이모작을 위한 자경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허용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운영('15.1.23.)
* 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2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통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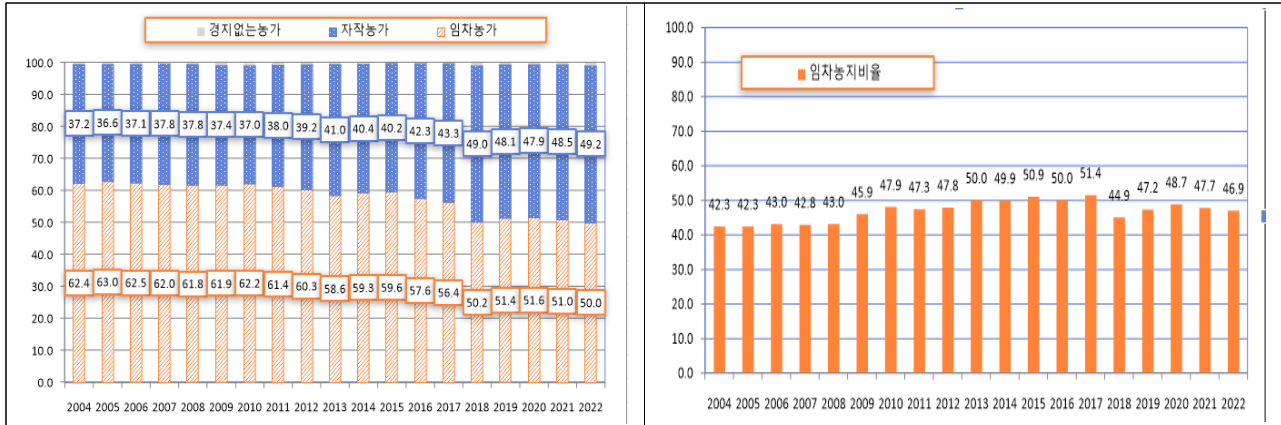
농지 임대차 제도 개정 연혁

- (1999년)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
- (2003년)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용지로 농지임대를 허용.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세대당 1,000㎡ 미만의 농지 소유와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 허용
- (2005년)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2005. 10. 1. 시행)
 - 개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농지의 임대·사용대를 허용
 -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 등의 소유농지 임대의 악용 소지 방지를 위해, 임대 가능 농지소유자를 개인으로 한정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 허용
 - 비농업인(非農業人)의 상속 및 이농 농지 소유상한 완화
 -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2ha까지)
- (2009년) 비농업인 상속농지 임대(위탁) 상한 폐지
 - 비농업인 상속(相續)농지의 농지은행 임대위탁 한도(2ha) 폐지 :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중 소유한도(1ha)를 초과하는 농지를 2ha까지만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이농(離農)의 경우, 06년 폐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획관리·자연녹지 농지를 농지은행 위탁관리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LH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취득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도록 의무화함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완화 : 대표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 완화(1/2 → 1/3)
- (2012년) 임차농 보호제도 도입
 - 임대차 기간 3년 보장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 임대인이 징집, 질병, 취학, 부상(3개월이상),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長)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소유자가 변동시에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는 안정적·계획적 영농
 - 임대차계약에 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하도록 함
 - 농지법 위반 약정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함
- (2019년) 농지 임대차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 종전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 종전에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임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모자(母子)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영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 (2022년) 농지 임대차 계약 관리 강화(임대차 신고제 도입)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토지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유 발생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법 제49조의2)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단, 22.8.18. 전 계약한 임대차 및 설치한 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22.8.18. 이후 임대차 계약 해제·수정시 신고의무 발생)

참고 5

농지 현황 자료

□ 임차농가 및 임차농지 비율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22 농가경제조사, kosis.kr

□ 지역별 농가 보유(자가,임차) 논 면적 현황 (단위 : ha, %)

	총 경지면적	논 보유면적	자기 논 보유 면적	비율	타인 논 보유 면적	비율
서울특별시	3,962	1,221	1,128	92.3	94	7.7
부산광역시	5,496	2,381	1,655	69.5	726	30.5
대구광역시	10,827	3,954	3,014	76.2	940	23.8
인천광역시	14,045	10,282	6,338	61.6	3,945	38.4
광주광역시	10,255	5,866	4,220	71.9	1,646	28.1
대전광역시	5,859	2,053	1,727	84.1	325	15.9
울산광역시	7,010	3,560	2,692	75.6	868	24.4
세종시	5,718	3,102	2,083	67.1	1,019	32.9
경기도	109,110	63,423	40,699	64.2	22,723	35.8
강원도	77,424	26,320	16,673	63.3	9,647	36.7
충청북도	67,507	27,841	17,388	62.5	10,453	37.5
충청남도	163,614	107,391	67,784	63.1	39,607	36.9
전라북도	140,247	98,303	57,816	58.8	40,487	41.2
전라남도	197,850	126,665	74,126	58.5	52,539	41.5
경상북도	163,505	78,474	47,675	60.8	30,799	39.2
경상남도	96,941	54,405	33,097	60.8	21,308	39.2
제주도	36,218	36	25	70.9	10	29.1
합계	1,115,587	615,277	378,140	61.5	237,137	38.5

자료 : 통계청, 2020 농업총조사(원자료), mdis.kr

□ 농업인 연령별 농지소유 면적

연령	농지소유 면적(ha)	백분율 (%)
39세 이하	1,381	0.2
40~49	13,839	1.7
50~59	84,014	10.3
60~69	283,651	34.7
70세이상	434,390	53.2
합계	817,274	100.0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2022년)

- (사업취지) 높은 농가 고령인구 비중, 청년세대의 농지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고령농의 농지이양 및 은퇴를 촉진해야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600만원/ha)만으로는 영농 유지시 수입보다 적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
 - (사업기간) 2024~2026년 (3년 한시 시범사업)
 - (지원대상)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중 1,000㎡미만 농지 소유 및 경작자
 - (연 지급단가/ha)

매도 : 600만원(정부) + 500만원(충남) = 1,1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 480만원(정부) + 350만원(충남) = 830만원
 - (수익 비교) ha당 평균 논농업 순수익, 각종 농업보조금*, 농민수당 등에 따른 영농 유지시 수익(892만원) 대비 (매도시)208만원, (임대시) 156만원 이득으로 추정

* ha당 평균 공익직불금 수급액, 건강보험료 감면액, 국민연금 감면액, 농자재 지원액
 - 농지이양 은퇴직불만 받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0.3ha 이하 소유 및 경작을 허용하나, 여기에 충청남도 은퇴직불을 추가로 받는 경우 위 해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 미허용, 농업경영체 말소를 원칙으로 함 (농업 경영 은퇴를 전제로 지급)

참고 7

해외 농지 관련 사례 (프랑스, 일본)

□ 프랑스 SAFER(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

- 전국 농지시장의 관측, 농지 매입·판매, 임대차 중개, 취득농지를 정책방향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 수행
 - 영농규모화 촉진, 신규농·유기농업 등의 영농정착 지원
 -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농지거래정보는 SAFER에서 관리
- 협의, 선매권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특수권한을 가짐
 - 주로 농업용 미개발 토지에 선매권 행사
 - 농지보호구역(ZAP)이나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농업(PPAN)의 농지를 보호하는데 선매권이 주로 작동함
- 농지시장 개입률은 약 21.2%(2021년)으로, 연간 농지거래 실적은 40만건, 농지매입 사업규모는 약 2조8,727억원 규모임.
- SAFER의 매입농지의 절반 이상은 '영농규모화' 목적으로 배분되며(61%), 나머지는 '신규농'에게 배분됨(39%)
 - 농지은행의 매입·판매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함

※ SAFER의 농지 매입/재판매/보유 내역 (단위: 천ha)

	1990	2010	2015	2021	2022	1961년 설립 이래 누적 면적
매입	112	75	84	109	103	4933
재판매	112	76	87	106	102	4799
- 신규농 정착	32	26	31	34	41	-
- 영농 규모화	69	23	24	28	33	-
보유	59	41	42	35	39	-

주 : 매입/재판매 실적은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 Groupe Safer; GRAPH'AGRI 2023에서 인용

□ 일본의 전국 농지 네비게이션 사업

- 농지대장과 농지공간정보(GIS)를 결합하여 지도정보서비스 제공
- 누구나 회원가입, 등록 필요없이 무료 이용 가능
- 전국농업회의소가 운영하며, 시각화된 농지 위치 확인, 위치정보를 클릭하면 거기에 연결된 농지대장의 정보 일부가 표시됨
- 지목, 면적, 유휴농지 여부, 소유자 의향, 임차권 종료일 등 조건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농지 정보 검색 가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51 E-mail : ley1970@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4-8호
심 의 연 월 일	2024. 12. 18. (제 23 회)

의
결
사
항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한 호
제출 연월일	2024. 12. 18.	

1. 의결주문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업경영체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비농업적 목적의 부정·허위 등록 및 경영체 분리·분할 등록으로 소규모 경영체 증가

* 경작면적 1,000m², 판매금액 120만원 등

- 경영체 분리와 농지 보유가 유리한 정책환경으로 후속 세대로의 농업 자원 승계·이전이 저해되어 영세·고령농 중심으로 농업구조 재편 우려
- 정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미래 지향적 농정방향 설정 필요

3.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물적) 등록요건 상향
-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농업경영체 집중육성 대상 설정
- 예비·은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 후속과제로 농외소득 기준의 재설정, 경영체 구성원의 지위 확립 추진
- ※ '24. 9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보고
 -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 하는 단위로 명확히 규정

4. 참고사항(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워킹그룹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4. 5 ~ 11월 / 6회)
- 전문가 간담회 개최(‘24. 5 ~ 11월 / 4회)
- 전남 선도농업인 워크숍 현장 의견수렴(‘24. 7. 19.)
 - 분야별(식량, 시설, 가공유통, 축산, 임업) 선도농업인 150명
- 농어업위 주최·주관 정책 토론회 개최(‘24. 8. 9. / 11. 11.)
 -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
- 농어업위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4. 11. 18.)
- 관계부처 의견수렴·협의(‘24. 11. 21. ~ 11. 27.)
 -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검토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와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요약 1부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전문 1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요약)

- (추진배경) 우리 농업의 미래 생존력·대응력 약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기준 재확립 필요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등록요건 없이 등록제 운영
 - 농업인 자격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이 동일하여 농업인과 분리된 농업경영체의 개념이 미약하고, 소규모 농업경영체를 양산
 - * 농업인 자격요건이 경작면적(1,000㎡), 판매금액(120만원), 종사일수(90일) 등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어 취미·부업 수준의 손쉬운 농업 목적으로 경영체 등록 가능
- (문제점) 분리·분할등록으로 소규모화 등 경영체 분리가 각종 지원에 유리하도록 정책환경이 제공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체가 증가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비농업적 목적의 등록(비농업인의 부정, 허위 등록 포함)이나 기존 경영체의 분리·분할 등록 유인이 존재
 - * 2023년 농가가 100만호 미만으로 감소되었으나, 2008년부터 등록제가 도입된 농업경영체는 계속 늘어나 184만개를 초과
- (추진과제)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구분하여 농업경영체 기준 개편과 규모화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업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경영체의 (물적)등록요건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
 -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농업경영체 집중육성 대상 설정
 - 유형별로 '기초·일반(전문) 농업경영체'로 차등화하여 등록요건 설정
 - 상향된 기준의 미충족 농가는 '기초' 경영체 유지, 일정 유예기간(3년) 이후에는 기초경영체 신규등록 제한
 - '일반' 및 '전문' 농업경영체에 한해 의무등록제로 전환 추진
 - 예비·은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별도의 농업경영체 유형 분류·관리
 - 후속과제로 농외소득 기준의 재설정, 경영체 구성원의 지위 확립 추진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89
II. 농업경영체 개요 및 현황	91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91
2.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93
III. 문제점	95
IV. 해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사례	97
1. 해외 사례 검토 종합	97
2. 일본 사례 [인정농업인]	98
V. 농업경영체 기준 개편방안 및 후속 과제	100
1. 농업경영체 (물적) 등록요건 상향	100
2.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집중육성 대상 설정	102
3. 예비·은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102
4. 후속 추진과제	104
VI. 향후계획	104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우리 농업의 미래 생존력·대응력 약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기준 재확립할 필요
 - 법적으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등록요건 없이 등록제 운영
 - 농업인 자격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이 동일하여 농업인과 분리된 농업경영체의 개념이 미약하고, 소규모 농업경영체 양산
 - 비전업적·비상업적 목적의 영농 증가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의 성장동력 약화
 -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비농업적 목적의 등록(비농업인의 부정·허위 등록 포함)이나 기존 경영체의 분리(세대)·분할(경지) 등록의 유인이 존재함
 - 영세·고령농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심각한 상황 직면 우려
 - 농업인 자격요건이 경작면적(1,000㎡), 판매금액(120만원), 종사일수(90일) 등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어 취미·부업 수준의 손쉬운 농업을 목적으로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요건으로 하거나 ‘농업인’ 자격의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다양한 농정사업과 조세제도(농업직불금, 농민수당, 농지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수혜가 가능한 최소규모의 농업경영체 증가
 - 전체 농가인구가 조만간 200만명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 경영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영체 수와 농가인구가 곧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로 반세기 이상 계속 줄어 온 농가가 2023년 100만호 미만으로 감소
 - * 2008년부터 등록제가 도입된 농업경영체는 계속 늘어나 184만개를 초과

□ (추진경과) 농업·농업인,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의 필요성과 파생되는 문제 공론화, 개선방향 제시

- (2023) 전국 지역별 순회간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농업·농업인 정의와 관련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024)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 개편과 기준 재확립으로 농정 목표와 추진의 틀을 명확화

- 농업·농업인 정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지원제도·정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음

* 농림사업(정책보조사업), 공익직불 수급 자격, 지자체 농민수당 등 수급자격 등 경영체 분리가 유리한 정책 환경 제공

⇒ 따라서 자격으로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 개편(9월)과 후속과제로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12월) 추진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보고('2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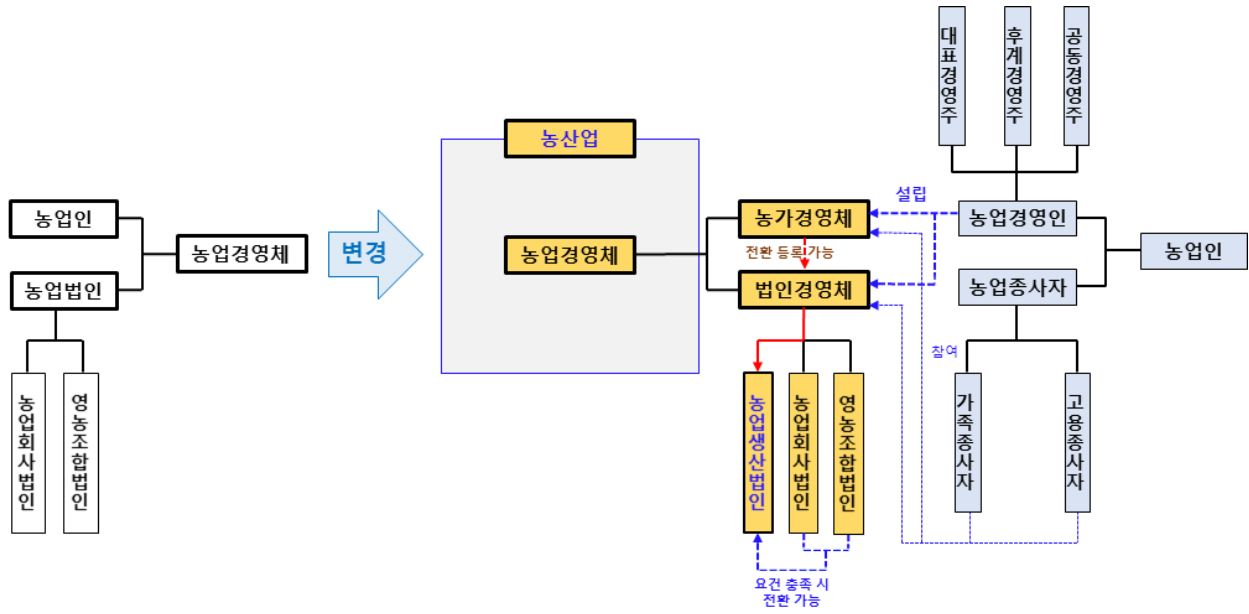
-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 명확히 규정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을 위한 법개정 제언]

법률	현행	개정방안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개정) ■ 3.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서 농가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한다.

※ 농업법인 구분은 하위 법규 개편 등으로 추진

《농업경영체 개편방안 모식도(안)》



Ⅱ. 농업경영체 개요 및 현황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도입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06년부터 추진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자 2008년 도입
 - 농업경영체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영농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임의등록 방식으로 제도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10.2) 제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경영체의 법적 정의와 등록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
 - 출발 당시부터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인, 농업경영정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는 「농업식품기본법」을 준용했는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단순 합집합으로 규정
-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업무편람에 제시된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업무 진행
 - 이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음
 - 영농현장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및 민원발생 증가

□ 농업인·농업경영체 제도·정책 대상 상호 관계

- 상당수 농업정책과 농림사업이 ‘농업경영체’에 근거하여 시행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조합원)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출자금 배당소득세 비과세(2천만원), 예적금 저율과세비과세 등 ◦지자체 농민수당 등 수급자격 (경기, 충남, 제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농지소유, 양도·상속시 조세감면(자경)	◦농림사업(정책보조사업) ◦공익직불 수급 자격 ◦지자체 농민수당 등 수급자격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면세유,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등 조세특례

2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 농가는 감소, 농업경영체는 증가

- 2023년 농업경영체 수(농업법인 제외)는 184만 개로 2019년 170만 개 대비 8.3% 증가(전체 농업경영체 구성원은 257만 명으로 4.6% 증가)
- 반면, 경영주외 농업인은 같은 기간 76만 명에서 73.3만 명으로 3.7% 감소
 - 특히,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2023년 97,412명으로 2019년 대비 16.2% 감소
- 2023년 신규등록 건수는 6.8만 건으로 지난 3년 동안 10만 건에 근접했던 것에 비해서는 감소

〈최근 5년 농업경영체와 구성원 추이〉

(단위: 개/명)

연도	경영체수 (경영주)	신규 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구성원 합계
				배우자	(공동경영주)	세대원	
2019	1,699,182	77,156	760,570	644,336	(35,925)	116,235	2,459,815
2020	1,745,473	94,336	747,832	635,239	(47,176)	112,594	2,493,375
2021	1,777,678	97,756	745,121	635,594	(92,133)	109,528	2,522,884
2022	1,827,852	96,881	743,309	640,830	(187,295)	102,481	2,571,294
2023	1,840,093	68,407	732,593	635,192	(235,156)	97,412	2,572,700

자료: 농관원 내부데이터 활용(2024)

□ 여성 경영주 경영체와 소규모 경영체 증가

- 2023년 남성 경영주는 128.4만 명으로 69.8%를 차지하고 여성 경영주는 55.6만 명으로 30.2%를 차지
 - 2019년 이후 여성 경영주는 18.8% 증가해 남성 경영주 증가율(4.3%)을 압도

- 최근 5년간 경영주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신규진입이 동시에 나타남

* 70대 이상 경영주 비중 변화: 40.8%('19) → 40.9%('23)

* 80대 이상 경영주 비중 변화: 15.8% → 16.1%

* 40대 이하 경영주 비중: 8.0% → 8.0%

* 50대 이하 경영주 비중: 27.0% → 25.8%

〈최근 5년 경영주 성별·연령별 농업경영체 분포 변화〉

(단위: 개)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합계
2019	남자	3,248	20,766	81,163	238,352	412,646	308,068	155,703	11,426	1,231,372
	여자	601	4,829	25,582	83,647	134,361	117,338	93,176	8,335	467,869
2023	남자	5,730	25,324	78,942	230,623	445,971	326,194	157,564	14,114	1,284,462
	여자	1,407	7,189	29,321	97,051	166,714	130,030	110,873	13,132	555,717

자료: 농관원 내부데이터 활용(2024)

- 2019년 대비 2023년 농지이용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는 소규모 경영체(0.1 미만, 0.1~0.2ha 구간)가 유의미하게 증가, 0.3ha 이상 모든 구간에서 경영체 수는 감소

〈농지이용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 변화〉

(단위: 개, %)

연도	경지없는 경영체	0.1ha 미만	0.1~0.2	0.2~0.3	0.3~0.5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합계
2019	5,272	178,118	329,334	181,888	175,754	130,514	50,170	10,749	5,319	2,097	1,069,215
	0.5%	16.7%	30.8%	17.0%	16.4%	12.2%	4.7%	1.1%	0.4%	0.2%	
2023	2,679	191,465	371,514	187,597	171,648	118,880	45,051	9,716	4,734	2,037	1,105,321
	0.2%	17.3%	33.6%	17.0%	15.5%	10.8%	4.1%	0.9%	0.4%	0.2%	

자료: 농관원 내부데이터 활용(2024)

Ⅲ. 문제점

□ 인구감소 시대 농업경영체 증가

- 농업경영체의 노령화, 영세화, 1인 경영체의 증가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장기간 추구해 온 농정방향인 규모화된 경쟁력있는 전업농의 육성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인 농정 구현,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과 배치

□ 분리등록과 분할등록으로 소규모화

- 동일주소, 동일세대에서 분리 등록한 경영체로 추정되는 사례는 매년 1,500건 가량 발생
 - 가족 구성원이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본인 명의 농산물판매영수증 제출을 통해 분리등록 가능

〈전년도 종사자가 당해년도 경영주로 신규 등록된 경우(인적정보 동일)〉

구분	전년도 경영주와의 가족 관계								합계
	며느리	배우자	부모	사위	손자녀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2019년	15	400	211	6	2	737	0	42	1,413
2020년	31	415	356	2	9	769	2	67	1,651
2021년	24	349	354	2	2	726	1	48	1,506
2022년	13	289	271	0	3	584	2	51	1,213

주1) 인적 정보에는 성명(중간 글자 제외),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코드가 포함됨

2) “며느리”, “배우자”, “부모” 등은 종사자 정보에 등록된 종사자와 경영주와의 관계를 의미함

자료: 2018~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농정원)

- 비농업인의 신규등록 수단으로서 동일필지 분리등록 활용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각각의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영체별 경계를 설치하면 가능
 - 「농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이모작 목적의 8개월 이내 개인간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 경영주 배우자가 분리등록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동경영주 등록의 실효성 부재
 - 공동경영주의 개념 미정립, 법적 지위 불명확 등 제도화 미흡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소득이 있을 경우 등록 불가
 - 농업경영체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증가로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1인 경영체로 각기 따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

□ 경영체 분리 및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각종 지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제공

- 후속 세대로의 농업자원 승계·이전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
- 농업경영체 수를 적정 수준 유지하고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업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

IV. 해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사례

1 해외 사례 검토 종합

- 해외의 경우 소득·매출액, 노동시간, 영농규모(경지면적·사육두수) 등이 등록기준 또는 유형 및 등급 구분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 (미국) 매출액 또는 현금조수입, 가족농 여부, 주부업 여부, 노동시간
 - (EU) 표준총수입 또는 표준산출물 품목군, 경제활동 유형, 농업외소득
 - * EU는 여러 회원국의 영농 특성과 부존자원, 소득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일된 기준(잣대)으로 정렬·분류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환 공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정된 영농규모나 생산가치를 새로운 기준변수로 사용
 - (독일) 보유 노동력 단위,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 (프랑스) 최소재배면적, 노동시간, 퇴직연금 수령 여부, 농업소득 비중, 보험가입 여부
 - (일본) 경지면적·사육두수, 주·부업 여부, 농업경영 개선계획 제출, 소득신고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별 농업경영체의 소득이나 매출액, 노동 투입량(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
 - 영농형태가 다른 경영체들의 영농규모를 '별도의 조작'을 통해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굳이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사례 참조가 적절

2 일본 사례 (인정농업인)

- 2005년부터 판매농가(자급적 농가가 아닌 상업적 농가)와는 별도로 농업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조직경영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농업 경영체' 개념을 도입
 - 농업경영체의 기준은 기존의 판매농가와 개념적으로는 동일(경지면적 30a, 연간 판매금액 50만엔)하나, 50만엔의 판매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규모를 영농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
 - * 직접 생산 외에도 농업 관련 수탁사업을 하는 자도 농업경영체로 인정
 - 노지채소 15a, 시설채소 350m², 과수 10a, 시설 화훼 250m², 젖소 1마리, 육우 1마리, 돼지 사육두수 15마리, 산란계 사육두수 150마리, 육계 연간 출하두수 1,000마리 등 기준 설정
 - * 그 밖에 품목/가축은 조사기일 전 1년간 농업생산물 총판매액 50만엔 상당의 사업규모
- 농업경영체는 가족경영체(기존 판매농가와 유사한 개념)와 조직경영체로 구분되며, 조직경영체는 법인경영체와 비법인경영체(비법인 형태의 집락영농 등)로 다시 구분됨
- 또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는 소득원천 비중, 연령,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주업 / 준주업 / 부업적 경영체로 분류
 - * 주업경영체 : 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 조사기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경영체
-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중 농업경영 개선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농업경영체를 인정농업인으로 구분
 - 농업경영개선계획(5년 계획)에는 ①경영규모 확대, ②생산방식 합리화, ③경영관리 합리화, ④농업 종사조건 개선 등에 대한 5년후의 목표와 달성 방안을 기재

- 농림수산성은 ‘후계농업인’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달성했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영체”로 정의하고 인정농업인을 이 범주에 포함
- 일본 정부는 인정농업인을 비롯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하여 육성

□ 일본은 2005년 이래 농가 호수, 농업경영체가 모두 감소

- 2005년 이래 농업경영체는 절반 가까이 감소(‘05년 2,009천개소→’20년 1,076), 경영체당 경지면적은 ‘05년 1.84ha에서 ‘20년 3.05ha로 증가
- 인정농업자는 20만명 초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3%로 크게 증가

〈일본의 농가 및 농업경영체 추이〉

(단위: 천 호, 명, 천 ha, ha)

연도	2005	2010	2015	2020
농가호수	2,848	2,528	2,155	1,747
판매농가	1,963	1,631	1,330	1,028
자급적농가	885	897	826	719
농업경영체	2,009	1,679	1,377	1,076
가족경영체	1,981	1,648	1,344	1,037
조직경영체	28.1	31.0	33.0	38.4
인정농업자	201	249	238	234
법인 경영	19.1	21.6	27.1	30.7
농사조합법인	2.6	4.0	6.2	7.3
주식회사	10.9	12.7	16.1	18.9
기타	5.6	4.8	4.8	4.4
경영경지면적(천 ha)	3,693	3,632	3,451	3,233
경영체당 평균면적(ha)	1.84	2.16	2.51	3.05
임차면적(천 ha)	824	1,063	1,164	1,257
임차비율	22.3	29.3	33.7	38.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각년도, 김종인(2024) 재인용

V. 농업경영체 기준 개편방안 및 후속 과제

1 농업경영체의 (물적) 등록요건 상향

- 전업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등록요건을 경작면적(논 기준) 3,000㎡, 연간 판매금액 360만원으로 상향
- 현행 농업경영체를 유형별로 ‘기초/일반(전문) 농업경영체’로 차등화
 - 상향된 기준의 미충족 농가는 ‘기초’ 경영체 유지(기존 농업인의 저항감 최소화), 일정 유예기간(3년) 이후에는 기초경영체 신규등록 제한
 - ‘일반’ 및 ‘전문’ 농업경영체에 한해 의무등록제로 전환 추진

-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농업인 정의 재정립 연구, 2023), 해외 사례 등을 감안 전문가 논의
 - ▶ (경작면적 기준) 500평 이상(30.4%), 1,000평 이상(35.9%)
 - ▶ (판매금액 기준) 300~500만원 이상(30.4%), 1천만원 이상(35.5%)
 - ▶ (일본의 농업경영체 기준) 경지면적 30a, 연간 판매액 50만엔

- ◆ 최근 3년 주요 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총수입, 소득 비교(출처: 농촌진흥청)
 - ▶ 복합 영농형태 간 동일한 등급으로 매칭하기 위한 영농규모 설정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 활용
- * 가령, 쌀은 재배면적 1ha 기준으로 707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노지 밭작물은 1ha에서 쌀보다 1.45배(무)에서 5.1배(배)까지 더 큰 소득 확보

(단위 : 만원/10a)

구분		쌀	고구마	양파	무	양배추	방울토마토	배
2020	총수입	121.6	345.6	428.5	234.6	248.7	1,699.2	551.1
	경영비	48.4	163.2	180.5	111.7	129.2	1,041.6	260.3
	소득	73.1	182.4	247.9	122.9	119.4	657.5	290.7
2021	총수입	129.4	383.1	467.8	252.8	214.0	1,790.4	717.3
	경영비	50.8	182.6	199.1	115.1	122.5	1,031.0	331.4
	소득	78.5	200.5	268.6	137.6	91.5	759.4	385.9
2022	총수입	117.1	323.5	498.1	228.2	241.3	1,900.3	786.9
	경영비	56.6	189.3	209.2	125.2	144.3	1,073.0	383.2
	소득	60.5	134.1	288.9	103.0	97.0	827.2	403.7
3개년 총수입 평균값		122.7	350.7	464.8	238.5	234.7	1,796.6	685.1
3개년 소득 평균값		70.7	172.3	268.5	121.2	102.6	748.0	360.1

○ 규모화, 전업농 육성 등의 농정방향과 부합하도록 영농 형태별 유형에 적합한 영농규모 기준 마련

- '기초'와 '일반' 등급 간 영농규모 구분은 주요 정책수단에서 설정한 규모 기준과 함께 영농규모 분포, 해당 구간의 경영체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영농형태 유형(품목)별 영농규모 기준 차등화(안)>

논농업	0.3ha		2ha	
	기초 (42.7%) 8.8%	일반(중소규모) (46.3%) 41.2%	일반(대규모) (11%) 50%	
밭농업	0.2ha		1ha	
	기초 (44.9%) 12.5%	일반(중소규모) (44.6%) 38.2%	일반(대규모) (10.5%) 44.3%	
시설농업	0.1ha		0.5ha	
	기초 (48.2%) 4.8%	일반(중소규모) (34.3%) 28.4%	일반(대규모) (17.5%) 66.8%	
축산업	준전업농 기준		기업농 기준	
	기초 (62%)	일반(중소규모) (26.3%)	일반(대규모) (11.7%)	소 돼지 닭 오리

*괄호 안 수치는 경영체 수 비중을, 흰색 수치는 면적 비중을 나타냄

※ 각각의 기준에 미달한 복합 경영체는 모든 재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간 360만원 이상의 매출액 증빙 필요

<쌀농업경영체 유형의 영농규모 기준 차등화 예시>

	논 재배면적 구간 (ha)	경영체 수 (개)	비중	누적 비중	전체 면적 대비 비중	누적 비중	
기초	0.1 미만	89,936	8.76%	8.76%	0.62%	0.62%	농업인 기준
	0.1~0.2	187,775	18.29%	27.05%	3.41%	4.03%	
	0.2~0.3	160,816	15.66%	42.71%	4.80%	8.83%	
일반 전문	0.3~0.4	114,505	11.15%	53.86%	4.79%	13.62%	소농직불금 기준
	0.4~0.5	78,310	7.63%	61.49%	4.20%	17.82%	
	0.5~1.0	181,105	17.64%	79.13%	15.32%	33.15%	
	1.0~1.5	66,842	6.51%	85.64%	9.80%	42.95%	면적직불금 구간 기준
	1.5~2.0	33,944	3.31%	88.95%	7.06%	50.01%	
	2.0~3.0	32,764	3.19%	92.14%	9.59%	59.60%	
	3.0~4.0	16,058	1.56%	93.70%	6.68%	66.27%	면적직불금 구간 기준
	4.0~5.0	9,418	0.92%	94.62%	5.06%	71.34%	
	5.0~6.0	6,327	0.62%	95.24%	4.17%	75.51%	
	6.0~7.0	4,322	0.42%	95.66%	3.37%	78.88%	
	7.0~10.0	7,217	0.70%	96.36%	7.20%	86.07%	
	10 이상	37,369	3.64%	100.00%	13.93%	100.00%	
	합계	1,026,708	100.00%		100.00%		

2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집중육성 대상 설정

□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목적의 정책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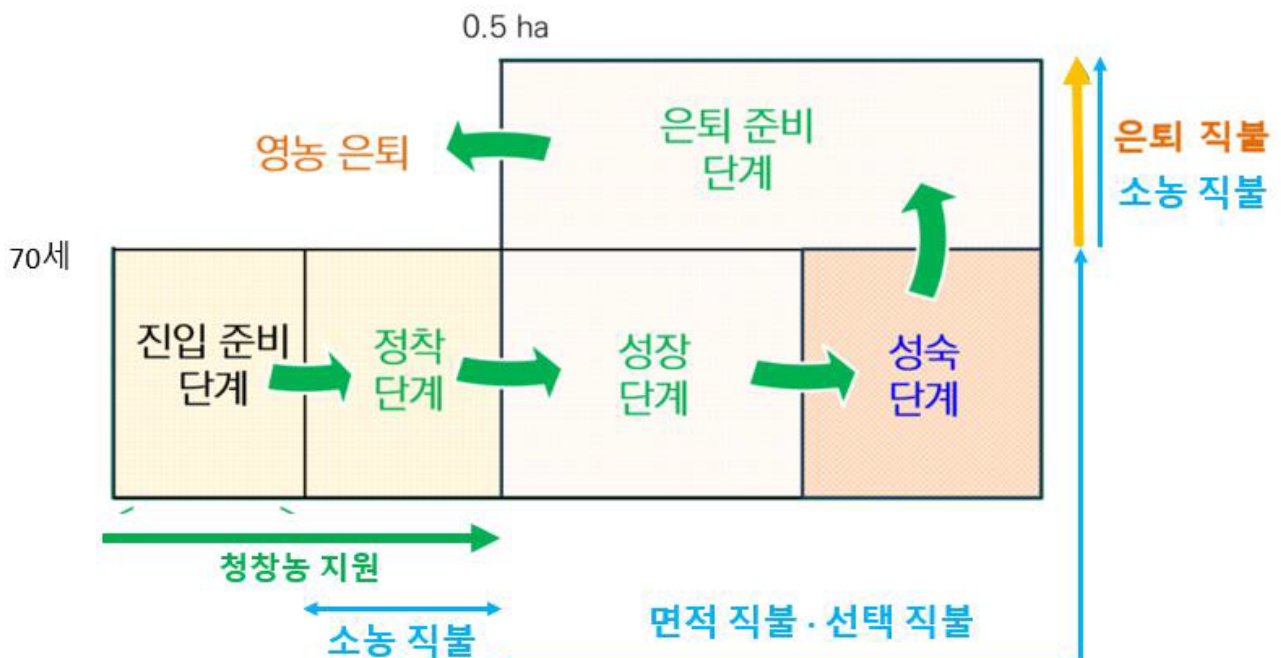
- ‘일반’ 농업경영체 중에서 관할 지역 농관원에 ‘영농 5개년 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 농업경영체로 등록 전환
 - 영농 5개년 계획에는 ①영농규모 유지·확대, ②생산방식, ③위험관리 ④농업노동력 확보, ⑤판로 확보 등에 대한 5년간의 목표와 달성방안 제시
 - 추가 사업자등록 의무와 별도의 전문적인 기준 설정

3 예비·은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 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 농업경영체를 별도의 농업경영체 유형으로 분류·관리

- (예비농업경영체) 영농기반(토지·시설·축사 등)은 아직 갖추지는 않았지만 6년 이내에 농업경영체에 정식 등록(등록요건 부합)할 목적으로 준등록(사전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농업경영체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 50세 미만인 신규 농업인이 예비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일정한 농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
 - 농업 관련 창업 준비자금, 농지 구입 자금, 세제 지원, 주거 및 생계 유지 등 영농 개시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

- (은퇴준비농업경영체) 10년이상 일반·전문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참여 및 후계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영체
 -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후계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 경영주가 70세 이상인 경영체에게는 은퇴준비경영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
 - 후계농업인과 일정 기간 공동경영을 종료하고 영농을 은퇴하면 은퇴경영체(또는 은퇴농업인)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
- * 후계농업인과 공동경영 할 수 있는 연령대와 기간을 지정(가령 65~74세, 최대 10년)하여 본인의 변경등록을 통해 은퇴(경영이양)준비농업경영체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은퇴경영인으로 분류
- * 은퇴경영체(또는 은퇴농업인)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지원, 농업인 국민연금 등 생산 비연계 농업인 복지 지원대상자로 법적 지위 확립



□ 농외소득 기준의 재설정

-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조정 방안 검토 필요
 - 최근 융복합기술의 발전과 농업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농업생산 활동 외에 소득창출 기회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일부를 전업적·상업적 농업경영체로 전환시킬 필요
 - * 현재 다양한 제도 및 농림사업에서 농업인을 구분하는 기준 역할

□ 경영체 구성원의 지위 확립

- 공동경영주, 후계경영주 등 농업경영인과 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등 농업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재확립 필요
 -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위는 불확실한 상황
- 대다수 농림사업에서 사업 대상 및 요건을 경영주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 보장, 실질적 혜택 부여
 - 경영주 농업인과 대등한 지위 보장하여 분리 등록 유인 제거 필요
 - 경영주와 마찬가지로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
 - * 현재의 공동경영주 요건 중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요건은 경영주 농업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VI. 향후계획

□ 본위원회 심의(24.12.18.) 후 관련 부처 안건 송부

-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 반기별(필요시 수시) 추진실적 점검·평가 시행

□ 2025년 후속 과제(농외소득 기준, 경영체 구성원 지위) 중점 추진

참고 1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기존 농관원 업무편람)

등록기준	증빙서류
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 (휴경·폐경 면적은 제외)	①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인삼경작확인서(인삼재배농지만 적용),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중 1가지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1가지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다.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라.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수탁 계약서 중 1가지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마.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경영체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③ 원료콩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
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 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편람.

참고 2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기준(기존 농관원 업무편람)

구분	등록기준
가족원	■ 경영주인 농업인의 총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 상기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비가족원	■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사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편람.

참고 3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개정 주요내용(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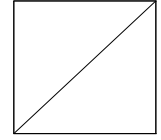
구분	농관원 고시
등록신청	제2조(정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 농업인, 가족, 농지, 농지대장,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정당한 권원, 거짓·부정방법, 수직농장 등
	제3조(등록신청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제4조(등록 신청시기) - (신규) 농작물 재배·가축·곤충 사육 확인 시점 - (변경)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변경범위 및 변경발생 14일 이내
	제5조(등록신청 절차) 거주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신청
등록기준 세부내용	제6조(등록기준의 세부내용) ① 농업인의 등록기준 1.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1,000㎡ 이상 농지) 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농지에서 직접 경작 나.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한 농업경영 운영실적 2.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가. 농지 660㎡ 이상 채소·과실·화훼(임산물 제외) 재배 나. 농지 330㎡ 이상 고정온실·비닐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 다. 건축물(재배사)에서 콩나물 재배 라. 330㎡이상 농지에서 가축 사육(양봉 제외) 마.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하고 가축사육 바.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사육을 신고하고 곤충 사육 사.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하고 꿀벌 사육 아. 건축물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 ②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 또는 고용인)의 등록기준 ③ 농업법인의 등록기준
	제7조(등록기준의 증빙서류) ① 등록기준 증명서류 - (1,000㎡ 이상)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 (1,000㎡ 미만)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판매실적(120만 원) (추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축산·곤충·양봉 신고·등록증 등 등록기준 충족 증명 서류 - (가족)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해당 서류, (고용인) 고용계약서(최근3개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급여내역 - (법인)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조합원 출자내역, 농업인 확인서류 등 ② 등록 신청자의 소유농지·사육시설이 아닌 경우 증명 서류 - (농지) 임대차 정보가 포함된 농지대장, (시설 등)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대장 등재 불가) 공공기관 등의 사용권한을 확인받은 서류 ③ 농업경영 증명서류 - 농산물 판매, 농자재 및 종자 구매, 계약재배 등 확인서류
업무위임	제8조(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주: 밑줄 친 부분이 기존 업무편람과 달리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10.10.)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51 E-mail : ley1970@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4-9호	의 결 사 향
심 의 연 월 일	2024. 12. 18. (제 23 회)	

수입플라스틱 조화사용 자제 권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창 길
제출 연월일	2024. 12. 18.	

1. 의결주문

-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수입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섬유로 제작·유통 중이나, 소각·매립 또는 풍화 과정에서 탄소배출과 미세플라스틱 용출 등 환경오염 유발
- 또한,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은 화환 등에 생화와 조화를 섞은 상품을 유통하고 있어 국내 화훼시장 유통 질서 교란
- ☞ 환경오염 유발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생화 사용의 촉진 및 화훼산업의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 정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제기
-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의 자체적 노력과 지역 관련 주체와 협력을 통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감축 노력 촉구
- 화훼업계의 건전한 화환 유통 문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제기

4. 참고사항

- 농어업위·화훼생산자단체(한국화훼협회,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간담회에서 정책 필요성 제기('24.7.25)
- 한국화훼협회 등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24.11.12)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31만 달러로 연평균 2,211톤이 수입된다. 수입된 조화는 주로 상업적 및 가정용 장식, 화환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 화훼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풍화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용출된다.

김해시에 따르면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추정 폐기물은 전국 공원묘원에서만 연간 약 1,557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각할 시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김해시, 고양시, 창원시, 음성군 등 기초지자체와 충북, 전북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현재 공원묘역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과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업계 및 사용자(국민), 화훼농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온실가스 및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촉구한다.
2. 중앙정부는 환경 위해성이 높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생화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한다.
3. 지방정부는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감축되도록 조례제정 등을 노력하고 공원묘원 및 지역화훼 농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화훼업계는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함께 생화 사용 생활화를 위한 합리적 가격의 생화 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2024. 12. 1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참고 1

플라스틱 조화 수입 현황

- 최근 5년의 플라스틱 인조(조화)의 평균 수입 물량은 2,211톤이며 금액은 평균 약 1,672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는 1,608만 달러 적자로 나타남

(단위 : 톤, 천 달러)

HS 코드		'19		'20		'21		'22		'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702 10-0000 플라스틱 인조	전체	2,318	15,830	2,092	15,778	2,288	17,671	2,419	19,034	1,940	15,306
무역수지		-15,562		-15,742		-17,573		-18,946		-15,215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임

HS 6702 :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10 : 플라스틱 0000 : 플라스틱

참고 2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연간 환경오염 현황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연간 환경오염 현황(김해시 자료)

구분	개소 수	매장기수	조화쓰레기 발생량(톤)	탄소 배출량(톤)	미세플라스틱입자 발생량
국립 묘지	11	318,606	287	793	24억 5천 만개
전국	470	1,729,887	1,557	4,304	133억 3천 만개

※ '20년 각 시·도 장사업무실태조사 제출자료

※ 국립묘지 현황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 플라스틱 조화 환경오염 실태 산출근거(연간)

- 1) 기당 조화 평균무게 150g×2묶음×평균 방문횟수 3회(설, 추석, 청명, 한식, 어버이날, 기일 등)

- 2) 플라스틱류 기준 톤당 2.7642 tCO₂ 발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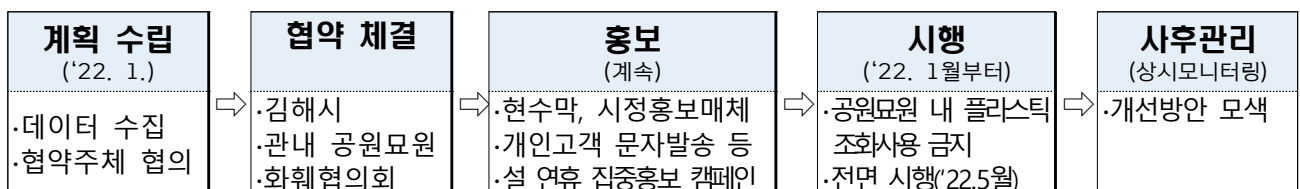
- 3) 플라스틱 조화 1묶음(150g)당 미세플라스틱입자 1,284개 발생(국내 조화 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

참고 3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관련 정책 사례

□ 김해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정책

- (목 적)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도모
- (사업내용) 전국 최초,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 (사업위치) 김해시 관내 전(全) 공원묘원 4개소
- (시행시기) 2022년 1월 설 명절부터 ~
- (사 업 비) 비예산사업
- (추진방법) 민관 업무협약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협약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방안 추진 업무협약
- (기대효과)
 -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개선 : 플라스틱쓰레기 발생 억제, 미세 플라스틱과 탄소배출량 저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화훼산업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민간 ESG경영(지역사회공헌) 확대
 - 시민 환경인식 개선 및 시민참여형 환경문화 확산
- (추진체계)



참고 4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관련 지자체 조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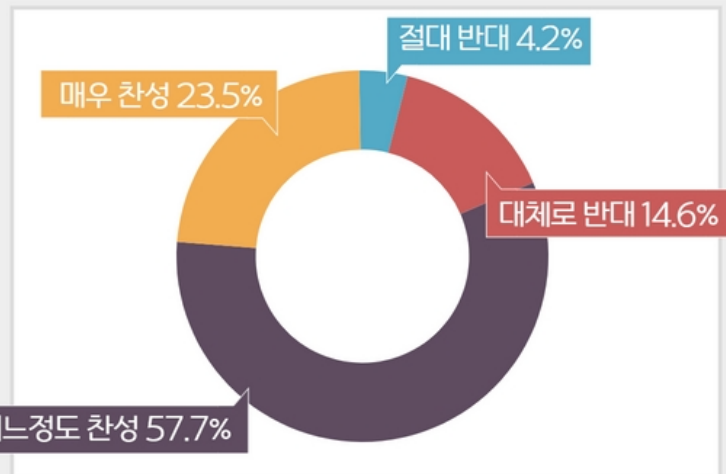
지자체 (제정일)	조례명	주요내용
김해시 (‘23.11.02)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김해시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농가 지원, 생산기반시설 설치, 유통 기반 조성,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에 의한 피해 방지와 김해시 화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고양시 (‘24.05.17)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연구,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소비 촉진, 국제 꽃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 환경적 피해 방지와 생화·신화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창원시 (‘22.10.26)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창원시 화훼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소비 촉진,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 사용 방지와 신화환·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제공
음성군 (‘24.05.1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음성군 화훼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박람회 지원,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플라스틱 꽃 사용 방지 및 지역 화훼 우선 구매 요청 - 지역화훼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의 화훼제품 홍보 및 구매 촉진
전북자치도 (‘24.07.05)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5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지원 - 화훼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조성,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유통 효율화 도모 - 도내 생화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 보호와 화훼산업 활성화 도모
충청북도 (‘24.05.17)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5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 - 화훼농가의 경영안정, 유통기반 조성, 소비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가능 - 공공기관에 충청북도 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 홍보 하고,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 권장

인식조사 결과

2022.08.02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생화 사용 찬성 여부) 결과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화보다 생화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81.2%, '반대한다' 18.8%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반대 4.2%, 대체로 반대 14.6%, 어느정도 찬성 57.7%, 매우 찬성 23.5%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조사대상 : 전국 성인 1,000명 (제주제외)

조사방법·기간 : 온라인 패널조사 22.6.29-7.6

표본오차 : 95%±3.1%p

의뢰기관 :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조사기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21 E-mail : nicengirl@korea.kr

제 23 차 위 원 회

보 고 안 건
(4 건)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요약)

□ 추진 배경

- 고도화된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도입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득 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농어업위에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안)」(2023.12)을 마련, 농업인 공감대 확산을 추진 과제(2024)로 제시
- 현장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소득과약 로드맵 실천 필요

□ 농업소득정보 체계 기반 구축 및 관련 정책 방안

- 농업경영체 DB의 소득정보 활용성 강화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표준소득 정보를 산출하고,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소득정보 제공방안 검토
- 정책연계 소득정보 개선 및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개발
 - 정책연계 소득정보 현황과 활용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DB와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입력자료의 간소화 방안 마련
- 소득정보 활용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 농업소득에 기반한 국내외 정책프로그램 검토 및 작목별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 농업경영체의 사업자등록 독려 및 소득신고 방안 강구
 - 신규 청년농업인,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영체 등의 사업자등록 독려
 - 농업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교육·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맞춤형 농정 실현으로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목 차



I. 추진 배경	131
II. 추진 경과	132
1. [2023] 농업소득 파악 3단계 로드맵 구상	132
2. 농업소득정보 파악 및 농업소득세 신고 공론화 추진 경과	133
3. 공론화 및 단계별 우선과제 의견수렴 결과 요약	136
III. 농업소득정보 체계 기반 구축 및 관련 정책 방안 ..	137
1. 농업경영체 DB의 소득정보 활용성 강화	137
2. 정책연계 소득정보 개선 및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개발	138
3. 소득정보 활용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139
4. 농업경영체의 사업자등록 독려 및 소득신고 방안 강구	140
IV. 기대효과	141
V. 향후 계획	142

I. 추진 배경

- 기후변화, 기상이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및 농가의 경영위험 노출 증가
 - 자연재해 증가* 및 시장개방 확대**로 농가의 경영불안정성 가중
 - * 피해 및 복구비 규모('13~'22): 피해 31,945.8억 원, 복구비 99,365.8억 원
 - ** 한·칠레 FTA('04) 이후 인도네시아 CEPA('23)까지 총 21건의 FTA 발효
 - 코로나19 등 이례적 상황 발생 시 농업 소득자료 미비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수혜 제한사례 경험
- 고도화된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도입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득 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농업 소득정보의 미비로 소득 기반 정책프로그램의 설계, 정책 자금의 효율성 등이 제한적
 - (예시)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2024.9)에서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세대 전환 지원** 등을 주요 소득·경영 안정 대책의 추진 전략으로 제시
 - * 수입안정보험 품목 수 확대 : ('24) 9개 → ('25안) 15 → (향후) 30
 - ** 청년농 선발 규모 : ('22) 2천 명 → ('23) 5 → ('24) 5 → ('25) 5
- 농산물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
 - 유통과정에서 매출 누락, 가공·위장거래가 발생하여 탈세의 유인이 되고,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로 농업인의 가격협상력 저하
- 농어업위에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안)」(2023.12)을 마련, 농업인 공감대 확산을 추진 과제(2024)로 제시
 -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 확산
- 지난 1년간 농업인이 참여한 현장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소득파악 로드맵 실천 필요

II. 추진 경과

1 (2023) 농업소득 파악 3단계 로드맵 구상

□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3단계(준비-도입-고도화) 중장기 로드맵

1. 준비 단계 (표준화)	2. 도입 단계 (전환 및 이행)	3. 고도화 단계 (일반화)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 확대 및 일반화		
<추계방식> ○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작목, 면적) ○ 소득조사자료(농진청 등)를 활용한 추계 - 품목별 수입, 경영비, 소득 ○ 농업소득기반 구축 교육 및 홍보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고시 ○ 소득신고 이행을 위한 대안 검토 ○ 정책적 활용 - 맞춤형 정책자료 활용 - 재난·복지정책에 활용 - 소득신고자료 활용(단순경비율 적용)	<혼합방식> ○ 경영체별 소득 추계 ○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도입 - 수입·경영비 직접 입력 후 소득 산출 ○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지원 체계 구축 ○ 복식부기, 간편장부 활용 소득신고 시 혜택 - 기장 할인 혜택 - 대출·보증심사 시 우대 -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 맞춤형 정책, 재난·복지정책에 활용	<기장방식> ○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활용 확대 - 매출, 매입정보 입력 - 재무제표 산출 - 소득신고서 산출 - 증빙자료 보관 ○ 복식부기, 간편장부 활용 소득신고 확대 - 대출·보증심사 시 우대 - 세무신고 시 기장 할인 -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 맞춤형 정책, 재난·복지정책에 활용
경영주 연령, 경영규모, 증빙능력, 기장능력 등에 따라 선택적 적용 고도화 단계로 갈수록 참여 정책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차등화		

1. 준비(표준화) 단계 : 농업경영체 DB의 생산정보와 농촌진흥청·통계청의 품목별 농업소득 정보를 결합하여 농가의 작목별 농업소득을 추계하는 단계

- 농업소득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공감 확산, 소득신고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준비, 농업(경영체)회계기준 고시

2. 도입(전환)단계 : 표준화 단계의 추계방식과 더불어 농업소득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농가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입력하여 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중간단계

- 농업경영체 DB에 소득정보 부활,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농업인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지원 체계 구축

3. 고도화(일반화) 단계 : 복식부기 기반의 농업소득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소득정보 또는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 소득기반 중장기 정책지원방안 마련, 농업인 사업자등록 일반화

◆ (2024년) 의결 안건(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안), 제2023-11호)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및 단계별 추진을 위한 우선과제 검토

2 농업소득정보 파악 및 농업소득세 신고 공론화 추진 경과

□ (1차)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공동 개최>

- 일시/장소 : '24.5.30.(목) 14:00~16:30 / aT센터 미래로룸 I
- 참석자 : 30여 명(농어업위, 학회,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등)
- 주제 :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 개선방안
 - (발제1) 농가 소득구조 변화 이해와 안정적 농업경영 체제 구축의 과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 (발제2) 농업통계의 의의와 한계〈이명현 인천대 교수〉
 - (발제3) 청년농이 경험한 소득신고의 어려움〈김후주 주원농원 대표〉
 - (종합토론 7명) 김태연 단국대 교수/농어업분과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하두중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홍정학새길텍스 대표세무사, 발제자 3명

□ (2차) 전남 선도농업인연합회 워크숍 특강 및 간담회

- 일시/장소 : '24.7.19.(금) 11:25~14:00 / 담양 온천리조트
- 참석자 : 200여 명(전남 선도농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 특강 주제 :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김태연 워킹그룹장〉

□ (3차)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 농어업위 세션 토론회

- 일시/장소 : '24.8.19.(월) 16:30~18:40 /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 참석자 : 50여 명(농어업위, 학계,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등)
- 주제 :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
 - (발제1)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서상택 충북대 교수>
 - (발제2) 농업부문 소득신고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김영준 강원대 교수>
 - (종합토론 8명) 김태연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이명현 인천대 교수, 정혁훈 매일경제 기자, 발제자 2명

□ (4차) 친환경농업인 정책간담회

- 일시/장소 : '24.10.23.(수) 14:00~16:40 /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
- 참석자 : 30여 명(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 주제 :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
 - (발제1)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서상택 충북대 교수>
 - (발제2)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선방안<홍정학 새길텍스 대표>
 - (간담회) 김태연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좌장), 발제자 2명, 농관원 2명

□ (현장방문) 농업 소득정보관리 지자체*(전남 여수, 전북 남원)

- 일정/장소 : '24.9.11.(수) / 전남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전북 남원시청
- 방문자 : 6명(소득정보 워킹그룹장 및 위원 2, 지자체 1, 사무국 2)
- 목적 : 농업 소득정보 관리현황 파악 및 현장 의견수렴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HAGRIS)를 자체 구축하여 보조금 업무를 주용도로 사용하고, 농업소득지원시스템(HADIS), 농업경영체통합DB 등을 연계하여 활용

□ (워킹그룹 회의) 공론화 방향 및 로드맵 우선 추진과제 검토

- 구성 : 10명(농어업분과위원 2, 전문가 5, 농업인단체 2, 농식품부 1)
 - (분과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홍정학 새길텍스 대표세무사, (전문가) 서상택 충북대 교수, 이명현 인천대 교수, 정원호 부산대 교수, 신재근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국장, 김영준 강원대 교수, (농업인단체)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운영) : '24.5월 ~ 11월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1차 회의	'24.5.14.(화) 14:00~16:00 / 농어업위 중회의실	7명 (분과위원2, 전문가3, 사무국2)	- '24년 의제 추진 방향 및 1차 토론회 개최(5.30.) 논의
2차 회의	'24.7.8.(월) 14:00~16:10 / 농어업위 대회의실	12명 (분과위원2, 전문가5, 농업인단체2, 정부1, 사무국2)	- 전남 선도농업인연합회 워크숍 (7.19.) 특강자료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3차 회의	'24.8.19.(월) 11:00~13:00 /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10명 (분과위원2, 전문가5, 지자체1, 사무국2)	- 토론회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개선 과제 논의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농어업위 세션 토론회 개최
4차 회의	'24.9.24.(화) 16:00~18:10 / 농어업위 대회의실	10명 (분과위원2, 전문가5, 정부1, 사무국2)	- 현장방문(9.11.) 결과 시사점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사항 검토내용 발표 및 논의
5차 회의	'24.10.29.(화) 10:00~12:00 / 농어업위 대회의실	10명 (분과위원2, 전문가4, 농업인단체2, 사무국2)	- 12월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논의
6차 회의	'24.11.13.(수) 10:00~12:00 / 화상회의	11명 (분과위원2, 전문가4, 농업인단체2, 정부1, 사무국2)	- 제23차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초안 검토 논의

- (공감대 형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득에 기반하여 지원된 점을 계기로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 고령화 및 농업소득세 무신고 관행으로 소득파악 및 과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 및 부정적 인식이 많음
 - 수용성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방향성 구체화 및 교육·홍보) 농업소득 기반 구축의 목적 및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함
 - 소득 기반 구축의 목적은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및 농가경영 안정의 고도화에 있음
 - 소득에 기반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편익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함
 -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정책연계와 과세 체계 편입임
 - 농업소득 파악 및 농업소득 신고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의 홍보를 통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소득정보 파악 방식) 농업경영체 DB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고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취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되어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아 소득정보 파악에 필요한 각각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단체 및 학계 주도) 농업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안 준비가 필요함
 - 현재 과세당국은 행정비용 과다로 농업인 과세에 소극적이지만, 급격한 사회 분위기 변화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음
 - 과세당국이 주도할 경우 농업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단체 및 학계가 먼저 나서서 농업 현실에 맞게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함
- (청년농 소득신고의 어려움)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세제 관련 정보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청년농업인들이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 신고 시 업태를 농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잘못 등록하여 세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지역의 고령농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도와줄 때 매입증빙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으며, 세무 대리로 기장료가 발생하기도 함

Ⅲ. 농업소득정보 체계 기반 구축 및 관련 정책 방안

1 농업경영체 DB의 소득정보 활용성 강화

- 단기적으로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표준소득 정보를 산출하고 맞춤형 농정을 위한 정보 제공
 - 농업경영체 DB의 작목 및 면적정보와 농촌진흥청·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작목별 소득정보를 결합하여 표준적인 정보를 산출
 -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 및 정확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 및 작목별 유형분류 방식 등에 대한 검토 진행
 - 농업경영체 DB의 작목정보와 농촌진흥청·통계청 작목정보의 매칭 수준을 결정하고, 소면적 작목의 소득정보 현행화 추진

- 지자체 단위에서 농가 및 작목의 소득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관련 정보를 산출하여 지자체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농업경영체 DB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거나 경영체 DB 연감 등에 해당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소득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DB의 접근권한 부여 방안 검토

2 정책연계 소득정보 개선 및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개발

- 정책연계 소득정보 현황과 활용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DB와 연계 방안 검토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사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등 경영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정책연계 프로그램별 제출자료의 양적·질적 수준, 자료의 집적 및 관리 수준,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점 도출 필요

- 농업경영체 DB와 정책연계 프로그램의 자료 매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입력자료의 간소화 및 정밀화 방안 마련

- 농업정책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득정보의 세부 사항을 분류하고, 고도화된 농업소득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산출

- 현행 회계기준의 농림어업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을 특수회계기준으로 고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한 소득정보의 산출 유도

- 농가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중복 방지 및 최소화를 도모하고, 소득신고에 필요한 정보까지 산출함으로써 정보의 효용성을 제고

□ 농업소득에 기반한 국내외 정책프로그램을 검토, 작목별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제공

-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 농가, 청년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기반의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 (미국) 수입보장보험 (캐나다) 소득안정계정, (일본) 수입보험 (한국) 수입안정보험 등

** 일본의 경우 복식부기 기반의 청색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보험 제공

- 수입안정보험의 전면 도입('25)에 따라 작목별 실제수입 또는 농가 소득신고 자료에 기초한 상품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

* 정책연계 소득정보 중 질적 수준이 우수한 품목 또는 농가(예: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소득신고(소득세 납부) 중인 농가나 대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적 도입 검토

- 청년창업농의 경우 경영기록 정보의 정밀성 확보를 전제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의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유도

□ 소득기반의 금융선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소득정보 증빙 시 차별화된 금융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컨설팅 강화 및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심사에 소득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4

농업경영체의 사업자등록 독려 및 소득신고 방안 강구

-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시 농업생산 및 가공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농업법인*, 청년창업농**, 규모화된 농가 등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영체 증가로 소득자료의 객관적 증빙 가능성 증가
 - * 농업분야 법인사업자: ('18) 17,473개소 → ('22) 26,104
 - ** 청년농 선발 규모: ('22) 2천 명 → ('23) 5 → ('24) 5 → ('25) 5
 - *** 농업분야 개인사업자: ('18) 27,544명 → ('22) 46,557
- 청년농을 포함한 신규농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DB 등록 시 사업자등록 독려
 -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성을 높여,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방안 강구
- 사업자등록 농업인 인센티브 제공 검토
 - 대출·보증심사 시 우대,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소득 기반의 재난·복지정책사업 시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
 - 농업경영, 마케팅, 최신 농업기술에 대한 무료 교육 및 경영관리 컨설팅 서비스 우선 제공 등
- 농업인단체 및 학계 주도로 농업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농가 수용성 증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소득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생산자단체, 세무 관련 협회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득신고 간소화 지원 체계 구축
 - 기검토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와 홍보 병행할 필요
 - * 평균소득과세, 준비금제도, 가족경영소득공제, 장기영농소득공제, 승계농·창업농·귀농인·청년농 세액감면,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등

<농업부문 소득신고 후생효과: CGE 모형분석> -김영준 강원대 교수-

- ▶ (실증분석 결과)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일 경우 소득신고로 인해 후생이 증가, 1ha 이상의 농가는 후생이 감소하였으나 소득신고(장부기장)로 인해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후생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농업인 과세특례 제외 시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홍정학 새길텍스 대표-

- ▶ 단순경비율 대상(매출액 6천만 원 미만) 농업인은 세부담 없음
- ▶ 2023년 농림어업조사 자료로 대비해 본 결과, 농업인의 92%는 세부담 없음

IV. 기대효과

☐ 맞춤형 농정 실현으로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소득수준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소득기반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금 배분의 효율성 증진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 2024년 9월에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소득정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촉진 및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표준적인 소득정보가 아닌 실제 소득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우수 농가에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정책자금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음

☐ 농업소득 과세로 농업부문 지원의 명분 확보 및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제고

- 타 산업(또는 도시근로자)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여 농업부문 지원 명분을 강화하고, 사업자등록으로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교섭력 제고에 기여

V. 향후 계획

- ☐ 본회의 보고('24.12.18.) 후 관련 부처 보고안전 송부
- ☐ 제19차 위원회 의결사항*(제2023-11호)과 연계하여 추진실적 관리

*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안)

단계	추진 과제
준비 (표준화)	• 농업 소득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공감 확산 • 농업인 소득신고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준비 • 소득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회계기준 고시
도입 (전환)	• 소득 파악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설계 및 구체화 • 농업경영체 DB 소득정보 부활 및 농업소득정보 시스템 구축 • 농업인 소득신고 지원 체계 구축 및 거래증빙 수수 편의성 증대
고도화 (일반화)	• 소득기반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 농업경영체 등록 시 사업자등록 일반화(중장기)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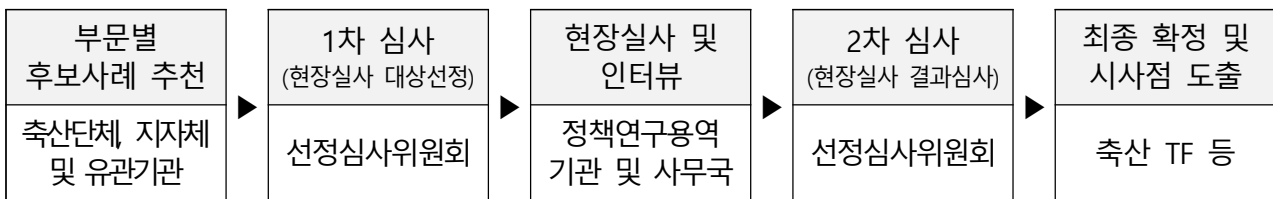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요약)

□ 선정 배경 및 목적

- 축산물 수입개방, 생산비 급증 및 환경 규제 강화 등 생산 여건 악화로 생산성 혁신을 통한 미래지속성 확보 필요

⇒ 생산성 향상 혁신사례 선정 및 확산방안 마련

□ 선정 과정



□ 혁신사례 선정 결과

부문 / 선정사례	선정사유
한우 중우농장(전북 고창)	한우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회전율 및 수익성 개선 ★ 전국 최초 민간후보씨수소 선정 □ 출하월령: ('21) 26.0 → ('22) 24.3 → ('23) 23.9개월 (전국 평균 31.1개월) * 1+등급 출현율(%): ('21) 40.0 → ('22) 73.9 → ('23) 78.6 (전국 평균 69.1%)
젖소 장원목장(경기 가평)	ICT 연계 젖소 데이터 관리로 원유 생산 증대 및 산차 개선 □ 305일 산유량(kg): ('21) 10824.5 → ('22) 11037.3 → ('23) 11622.1 (전국 평균 10,159) * 분만간격: ('21) 384 → ('22) 387 → ('23) 383 (전국 평균 447.7) * 도태산차: 3.46회 (전국 평균 2.82) → '23년 기준
한돈 돈트리움(경남 함양)	글로벌 표준인증으로 인정받는 청정 돼지 생산체계 구축 □ PSY 향상: ('21) 27.6두 → ('22) 29.7 → ('23) 31.6 (MSY 28.7) * 전국평균 PSY 22.0두 / MSY 18.7 ★ 축산업 최초 ISO9001/14001 인증
경축순환 여주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경기 여주)	액비 제품 다양화로 작물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화학비료 감축 □ 시설농가 이용가능 액비 보급(시비 계절성 극복) / 부숙기간 60일 → 40일 / 화학비료 감축 75%
조사료 생산 신용안영농조합법인(전북 익산)	지역 농가 조직화 및 통합 조사료 생산-품질관리로 수입조사료 대체 □ 재배면적: 300ha / 15개 농가 / 전량 계약재배 / 열풍건조제조 / 수요처 확대(한우젖소 + 말)
축산물 품질 차별화 부경양돈협동조합(경남 김해)	생산-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소비자 맛 지향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 생산 □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 1등급 이상 출현율 76.7% (전국 평균 67.8) * 다양한 2차 가공품 개발·출시: 판매량 ('21) 254 → ('22) 324 → ('23) 558
축산 스마트팜 기술 (주)엠트리센	독자적 인공지능기반 모돈 정밀관리 기술 확보 및 현장 실용화 □ 분만사 모돈 정밀관리시스템 '딥아이즈(DeepEyes) 보급 * ('21) 7농가(644대) → ('22) 11(935) → ('23) 31(2,191)

□ 금후 계획

- 축산업 생산성 향상 혁신사례집 발간(~'25. 2월)
-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마련 및 안건 상정('25. 3월)



목 차



I. 배경 및 경과	149
II. 혁신사례 선정 과정 및 기준	150
III. 혁신사례 선정 결과	152
1. 주요 혁신 동인	152
2. 공통 혁신방향	153
3. 혁신사례 선정결과	154
IV. 시사점 및 향후계획	162

I. 배경 및 경과

□ (배경) 축산물 수입개방, 생산비 급증 및 환경 규제 강화 등 생산 여건 악화로 생산성 혁신을 통한 미래지속성 확보 필요

○ 수입 축산물 확대와 생산비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

- FTA 확대와 수입 축산물 유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가중

* (사료비 증가) 송아지 9.2% 우유 3.2% 비육돈 2.8% 계란 7.4% 육계 6.0% ('23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 (조사료 수입할당 폐지) ('24) 캐나다産 → ('25) 미국産 → ('28) 호주産

○ 환경 규제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요구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에 따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 요구

*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 확대('30년까지 25%), 악취배출시설 기준 강화 등

○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성 불안 요소 증가

- 기후 변화로 사료용 곡물 등 수급 변동성이 증가하고,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 빈도 증가

* '24년 폭염 돼지 폐사 7만 2천 마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행안부 가축재해보험 피해 신고접수 기준)

□ (경과) 농어업분과위 축산 TF 운영 및 혁신사례 발굴·선정

○ 축산 TF 구성 및 2대 어젠다 설정: ①생산성 향상 혁신, ②축산환경 혁신

축산 생산성 향상 혁신의 정의

축산업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환경지속성 강화를 목표로 기술, 관리 및 조직 측면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는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 정책·산업적 적용·확산이 용이한 7개 부문으로 혁신사례 설정(7월)

- 한우^①, 젓소^②, 한돈^③, 경축순환농업^④, 축산 스마트팜 기술^⑤, 축산물 품질 차별화^⑥, 고품질 조사료 생산^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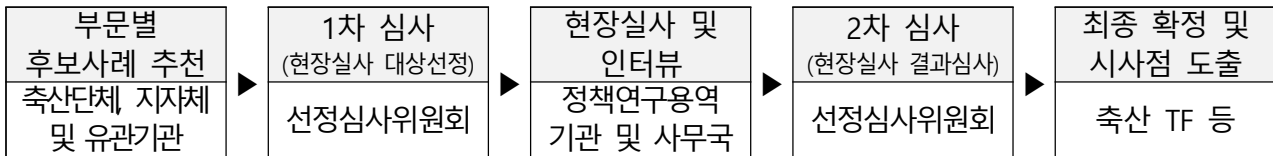
○ 혁신사례 선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5~11월)

축산업 생산성 향상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농가, 기업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모색 추진

Ⅱ. 혁신사례 선정 과정 및 기준

1 선정 과정 및 기준

□ 혁신사례 선정 과정



○ 부문별 혁신사례 후보 추천 ☞ 부문별 추천기준 [붙임] 참조

* 추천기관: 축종별 생산자단체, 농촌진흥청, 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축산과학원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축산 TF단장을 위원장 및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 및 심사

- (1차) 추천사례별 주요 생산성 지표* 심사 및 현장실사 대상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¹⁾, 축산환경관리원²⁾ 및 단체³⁾ 등이 보유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 활용

☞ ¹⁾도축성적, 스마트팜 등, ²⁾분뇨처리 및 자원화, ³⁾생산지표(예. 돼지 MSY 등)

- (실사) 2차 심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인터뷰 녹화

*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화상 인터뷰(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 (2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혁신사례 평가·선정

* 인터뷰 영상공유, 평가 기준별 지표 심사 및 혁신성 등 심사

□ 추천 및 심사기준

부문	1차 심사	2차 심사
한우	출하성적, 농장관리, 기술혁신 등	사례별 현장실사 결과 비교 분석 및 혁신 타당성 검토 등
젖소	유생산성 및 유질, 농장관리, 기술혁신 등	
한돈	생산성 및 돈육 품질, 농장관리, 기술혁신 등	
경축순환	퇴액비 생산, 기술혁신, 시장혁신, ESG 경영 등	
조사료 생산	조사료 공급능력, 기술혁신, 시장혁신, ESG 경영 등	
축산물 품질차별화	기술적용 농가수, 기술혁신, 시장혁신, ESG 경영 등	
축산스마트팜 기술	기술경영 및 개발능력, 기술/시장 혁신, ESG 경영	

대상	선정 기준
한우	▪ (대상 경영체) 100두 규모이상 일관비육 농가 ▪ (생산성) 사육기간 29개월령 미만으로서 육질육량 등급 전국 상위 10% 이내 번식성적(분만간격, 초산월령 등) ▪ (경영혁신) ICT 적용, 전산관리, 암소 유전체분석, 자급사료 활용, 수익성 등 ▪ (친환경) 약취제어, 분뇨관리, 경관 등
젖소	▪ (대상 경영체) 100두 규모 이상 유우균능력검정 농가 ▪ (생산성) 305일 유량 11,000kg 이상, 평균산차 2.6산 이상, 체세포수 15만개/ml 미만 번식성적(분만간격, 초산월령, 공태일수 등) ▪ (경영혁신) ICT 적용, 전산관리, 자급사료 활용, 검정성적 관리, 유사비 등 ▪ (친환경) 약취제어, 분뇨관리, 경관 등
한돈	▪ (대상 경영체) 상시사육두수 2천두 이상 일관비육 농가 ▪ (생산성) MSY 24.4두 이상, 1등급이상 출현율 전국 상위 10% 이내 ▪ (경영혁신) ICT 적용, 전산관리, 운영시스템, 수익성 등 ▪ (친환경) 방역, 위생 약취제어, 분뇨관리, 경관 등
경축순환농업	▪ (대상 법인) 경종과 축산이 협업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정착한 조직 ▪ (경축 방식) 지역내 축산-조사료 생산-TMR 등, 지역내 축산-경종 작물-부산물 공급 ▪ (퇴액비 생산) 일일 50톤 이상 ▪ (운영혁신) 협의체 구성, 수익구조, 신사업 발굴, 사회적 가치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	▪ (대상 법인) 동계-하계작물 200ha 이상 생산 조사료경영체 ▪ (품질 혁신) 재배 및 수확관리 기술, 보관·유통기술, 부가가치 향상 등 ▪ (시장혁신) 물량확대, 수입조사료 대체 등
축산물 품질 차별화	▪ (대상 법인) 한육우, 돈육, 가금육 등 계열 조합·회사 ▪ (신규성) 새로운 육종개량, 사양관리 기술, 품질, 프리미엄 등 ▪ (시장혁신) 점유율 확대, 수입축산물 대체 등
축산 스마트팜 기술	▪ (대상 업체) 국내개발 정밀사양/스마트팜 서비스 기술 보유업체 ▪ (과학성) 신뢰성, 생산성 개선, 투자대비 수익성 등 ▪ (시장혁신) 점유율 확대, 수입품목 대체 등

Ⅲ. 혁신사례 선정 결과

1 주요 혁신 동인(動因)

□ 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 변화로 인해 농가·기업·정부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유발

혁신 동인		문제해결 대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친환경 생산과 탄소 배출 저감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자원순환, 탄소 중립, 분뇨 자원화 등의 노력 확산.	▶ 경축순환, 친환경 사료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혁신 촉진.
생산성 및 효율성 최적화 압박	축산업 경쟁력을 유지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술과 데이터 기반 경영 강조	▶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ICT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촉진.
정부 및 정책 지원과 규제변화	ICT 지원, 탄소 중립 정책,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과 환경 규제 강화	▶ 농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축산업 혁신의 기반을 제공하고, 환경 규제 대응을 촉진.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 증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이 축산에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예측 관리 용이	▶ 축산 스마트팜과 자동화 등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
소비자 요구 변화와 고품질 제품 수요 증가	소비자는 점차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을 선호하며, 이는 사료 개선, 품질 차별화 등으로 연결	▶ 근내지방 개선, 동물복지 등의 소비자 또는 정책 수요에 차별화된 기술 도입 유발
체계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질병 예방과 위생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 요구 증대	▶ ICT 활용 건강 모니터링과 질병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유지.

혁신사례는 철저한 자기맞춤형 전략으로 최적 기술도입과 실천 추진

[1] [목표관리] 맞춤형 목표 설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 혁신주체는 자신의 자원과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
 - [한우] 1⁺⁺등급 보다는 1⁺등급을 주목표로 설정하고, 단기비육을 통한 회전율을 향상하고, 자율급여 방식의 사양관리 효과를 검증 및 도입으로 수익성 제고 (중우농장)
 - [스마트팜] IoT와 AI를 통해 모든 관리에 특화된 건강과 사육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가 의사결정 편의성을 극대화 (엠트리센)
 - [젖소] 축사 규모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유량 증대와 경제산차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 기록 자동화를 통해 체계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장원목장)

[2] [기술품질] 최적 기술 도입 및 품질 관리 강화

- 소비자 요구와 환경적 책임을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을 도입하고, 품질 관리 체계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 [한돈] 돼지 질병 예방을 위해 PRRS-음성 후보돈 격리 입식, 경제사료 기반의 사양관리와 자체개발 목초액을 이용한 축사관리 기술 도입(돈트리움)
 - [조사료] 양질 조사료 재배와 함께, 품질개선을 위한 수분 조절과 열풍건조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유지와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신용안영농조합법인)

[3] [상생협력] 지속가능한 파트너십과 협력기반 강화

-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 확립
 - [경축순환] 경종·시설 농가에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액비를 제조하여 무상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성을 제고. 한돈농가로부터 받는 처리비용으로 운영(여주한돈협회)
 - [품질 차별화] 농가로 하여금 근내 지방도가 우수하고, PRRS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돼지를 지속 도입을 유도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부경양돈)

3

혁신사례 선정 결과

부문	혁신사례
한우 (중우농장, 전북 고창)	한우 단기 비육 최적화로 회전율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전국 대비 7개월 짧은 23.9개월령 출하 (1*이상 출현율 78.6%) * '23 전국 평균: 출하일령 31.1개월, 1*이상 출현율 69.1% ■ 전국 최초 민간 한우후보씨수소 선발
젖소 (장원농장, 경기 가평)	능력검정 데이터 기반 젖소 관리로 우유 생산성 제고 ■ 능력검정 자료 활용 산유량 증대: ('21) 10.8천kg/연 → ('23) 11.6 ■ 분만간격 단축·유지: ('21) 384일 → ('23) 383 일 → '23 전국평균 447.7
한돈 (돈트리움, 경남 함양)	건강하고 우수한 한돈과 경제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 모돈관리 강화를 통한 PSY 향상: ('21) 27.6두 → ('22) 29.7 → ('23) 31.6 * '23년 기준 MSY 28.7두 (전국평균 22두) ■ 국내 축산업 최초 ISO4001(품질경영) 및 ISO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
경축순환농업 (여주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경기 여주)	다양한 맞춤형액비 공급으로 이용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화학비료 감축 ■ 작목 맞춤형 제품 다양화로 액비 공급 확대: ('21) 5,148,148톤 → ('23) 7,785 ■ 액비이용 효과 현장검증 및 이용 확대: 화학비료 이용 감축
조사료 생산 (신용안영농조합법인, 전북 익산)	생산확대 및 품질향상으로 조사료 국산화 및 자급률 향상 기여 ■ 열풍 건조기술 도입을 통한 조사료 품질 향상 ■ 국산 조사료 보급대상 확대: (기존) 한우젖소 → (확대) (기존) + 말
축산물 품질 차별화 (부경양돈농협, 경남 김해)	생산자와 함께하는 소비자 선호 돼지고기 생산 및 제품 공급 ■ 돼지고기 육질개선을 위한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및 생산 ■ 소비수요 변화 대응 간편식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 출시 * 돼지고기 판매량 '23년 대비 10.3% 증가
축산 스마트팜 기술 (㈜엠트리센)	농가사용자 지향적 인공지능 기반 모돈 관리 기술 선도 ■ 인공지능 기반 돼지 산자수 자동기록 등 핵심기술 확보 ■ AI기반 모돈 관리 제품 판매 확대 * ('21) 7농가(644대) → ('24. 8월) 27(2,208)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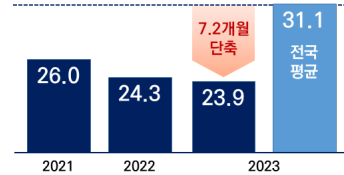
한우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회전율 및 수익성 개선

■ 전국 대비 7개월 짧은 23.9개월령 출하, 1⁺이상 출현율 78.6%

■ 전국 최초 민간 한우 후보씨수소 선발

■ 출하월령: ('21) 26.0 → ('22) 24.3 → ('23) 23.9개월

* 1⁺등급 출현율(%): ('21) 40.0 → ('22) 73.9 → ('23) 78.6 (전국 평균 69.1%)



중우농장(대표 김문석): 전북 고창 소재, 한우 700두(거세육성비육우 300, 번식우 250 등)

□ (목표) 단기비육을 통해 1⁺등급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회전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확보.

□ (기술품질) 단기비육에 적합한 한우 개량 및 사양관리 체계 확립으로 상위 육질등급을 유지하면서 비육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유전자 분석 기반 개량을 통한 단기비육 적합 우량한우 확보

* 근내지방도 우선 개량을 통해 단기 비육에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 개체 선발

☞ 전국 최초 민간 '후보씨수소' 선정('24)

○ 단기비육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자유채식 방식의 사양관리 체계 채택·운영

□ (상생협력) 고창군 '청춘한우사업단1' 활동을 통해 한우개량 기술·지식 공유, 지역 축협 및 대학과 협력 통해 저탄소 한우 시장선도

○ 청춘한우사업단과 고창부안축협, 전북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 한우 시장 선점 및 브랜드 가치 향상



민간최초 후보씨수소('2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저탄소 고창청춘한우' 출범을 위한 비전선포('22)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지정(축산물품질평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림축산식품부)

1) 고창군 내 청년농 등 34 농가로 구성된 사업단으로 국내외 선도 농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농가 적용하고,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

젖소

ICT 연계 젖소 데이터 관리로 원유 생산 증대 및 산차 개선

■ ICT 장비 활용 능력검정 데이터 수집 및 경영으로 산유량 증대

■ 젖소 경제수명 향상: 도태산차 ('23) 3.46 '23 전국평균 2.82

305일 산유량(kg): ('21) 10824.5 → ('22) 11037.3 → ('23) 11622.1 (전국 평균 10,159)

* 분만간격: ('21) 384 → ('22) 387 → ('23) 383 (전국 평균 447.7)



장원목장(대표 송병기): 경기 가평, 젖소 135두(착유 70, 육성우 30, 건유 11 등)

□ (목표) 목장 증축 등 규모화 한계 극복을 위해 생산성(평균유량, 산차 개선 등) 향상을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 (기술품질) ICT 장비 도입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개체관리 자동화·지능화 등으로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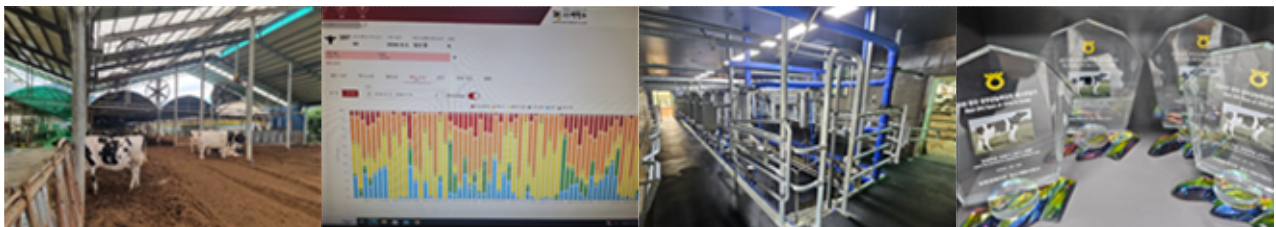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로 산유량, 번식 및 질병기록, 원유출하량, 유성분 및 체세포수 등 다양한 검정기록 축적 ⇒ 문제해결 활용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검정기록과 연계 가능한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여 기기간 데이터 병합관리와 기록관리 효율성 제고

* 원유생산량 자동기록, 자동급이기 활용 사료급여량 조절 등으로 기록을 자동화하여 개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산증과 같은 대사성 질병 예방 등

▶ 농협경제지주 주관 '23년 전국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평가대회 동북부 최우수 농가, 베스트 검정농가 지정

□ (상생협력) 적극적인 동물복지와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우사 바닥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착유실 위생 환경

검정상적 베스트농가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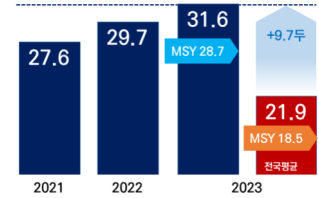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 HACCP 인증(생산단계)(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정(경기도청)

한돈

글로벌 표준인증으로 인정받는 청정 돼지 생산체계 구축

- 모돈관리 강화로 **PSY 향상**: ('21) 27.6두 → ('22) 29.7 → ('23) 31.6
* '23년 기준 MSY 28.7두 (전국평균 18.5두)
- **PRRS 청정화**, 자체 돈사환경 기술 및 **경제사료** 이용 생산비 절감



돈트리움(대표 남기석): 경남 함양, 돼지 2,517두('23)

- (목표) PRRS²⁾ 음성 돈군 조성과 깨끗한 생산환경 구축을 통해 다각적 생산비 절감 방안 실천
- (기술품질) 축사 현대화('19 신축) 및 돼지 생산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양돈 경영체계 확립
 - PRRS 음성 후보돈을 3개월간 격리한 뒤 최종 입식으로 질병 차단
 - 자체개발 목초 이용 기술특허보유를 적용하여 이유 전 폐사율 개선
* 이유 전 폐사율('23) = 8.2% (('23년 전국 평균 17.1%)
 -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 하에 경제사료 및 성장단계별 사료첨가제를 이용하여 생산비(사료비) 절감
- ▶ **국내 축산업 최초로 ISO9001(품질경영) / ISO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
- (상생협력) 돼지사육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분뇨·악취 관리와 함께 주변 경관 개선 추진



가족경영체계



축사 외부



분만사



악취저감시설(집진기)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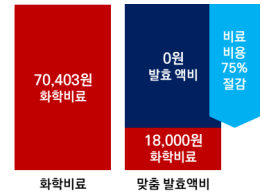
- HACCP 인증(출하단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ISO 9001 인증(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 인증(환경경영시스템) (IIC)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2) PRRS(Porcine Reproductive & Respiratory Syndrome):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경축순환

액비 제품 다양화로 작물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화학비료 감축

- 작목 맞춤 액비 제품 다양화로 액비 이용 확대
- 액비이용 효과 현장검증 및 이용 확대: **화학비료 이용 감축 75%**
- 시설농가 이용가능 액비 보급(액비 이용기간 연장) / 부숙기간 60일 → 40일



여주시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복): 경기 여주, 가축분뇨반입량 23,837m³/년

- (목표) 지역 내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액비 제품 개발과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으로 순환경제 실천.
- (기술품질) 가축분뇨 액비 생산 및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종·시설 농가의 생산비 절감(화학비료 감축)과 농산물 품질향상
 - 가축분뇨 액비 생산 효율성 제고 및 현장 활용도
 - * 액화산소 주입을 통한 부숙 기간 단축(60일 → 40일)으로 처리 효율성 향상
 -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물 맞춤액비 제품개발 및 무상 공급
 - 작목별 액비 제품 실증을 통한 이용 농가 신뢰도 확보
 - * 다양한 작목에 대한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효과 검증 및 농가설득
 - 맞춤형 액비 제조기(특허등록) 개발 및 이용 교육 등으로 농가 편의성 제고
- (상생협력) 경종농가와의 파트너십으로 맞춤형 액비를 제공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책임을 공유함.



맞춤형 액비 제조기



맞춤액비 공급



맞춤액비 현장교육



신기술보급 대상 수상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 맞춤형 액비 제조기 특허 등록(특허 제10-1843108)(특허청)
- 2018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농촌진흥청)
-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행정안전부)

조사료

지역 농가 조직화 및 통합 조사료 생산·품질관리로 수입조사료 대체

- 지역농가 참여 경영체 조직으로 조사료 생산 규모화(300ha)
- 고품질 건초 생산으로 시장 확대 (기존) 한우젓소 → (확대) 말
- ▶ 열풍건조제조기술 도입 / 전량 계약재배 / 수요처 확대(한우젓소 + 말)



신용안영농조합법인(대표 김원태): 전북 익산, 조사료 재배면적 305ha (동계 280, 하계 25)

- (목표) 조사료 생산증대 및 품질개선을 통한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 (기술품질) 고품질 건초 제조 기술 도입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공급 및 수요처 확대
 - '조사료 생산 경영체'로서 지역 경종·축산 농가가 함께 참여하여 재배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 * 총 재배면적: 305ha (동계 280, 하계 25) ※ '23년 전국 농가당 평균 경지 면적 1.5ha
 - * 재배작물: (동계)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하계) 옥수수
 - 수확 철에 잦은 비로 인한 조사료 품질 저하를 '열풍건조 생산 시스템' 도입으로 극복하여 양질의 국산 건초 생산
 - * 이물함유, 수분과다, 품질불균일 등으로 외면받던 국내산 조사료 이미지 쇄신
 - 건초 품질향상으로 공급 대상을 기존 한우·젓소에서 승용마까지 확대하고, 사전 계약을 통한 판매 실시
 - * 국내 조사료 시장: (기존) 한우, 젓소 → (개선) 말(승용마 → 경주마)
- (상생협력) 회원농가의 생산 및 품질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 사료공장 등에 사전 계약 판매 및 수익 공유
 - 또한 보유 중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수해지역 피해 복구 활동 등 지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예취 후 반전작업

조사료 열풍건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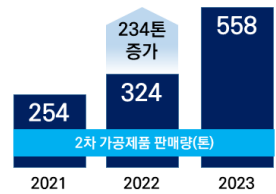
품질차별화

생산-유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소비자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 생산

- 소비자 선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 소비수요 변화 대응 **간편식 등 다양한 친환경 육가공 제품 출시**

■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 1등급 이상 출현율 **76.7%** (전국 평균 67.8)

* 다양한 2차 가공품 개발·출시: 판매량 ('21) 254톤 → ('22) 324 → **('23) 558**



부경양돈협동조합(대표 이재식): 경남 김해, 회원 117농가, 출하물량 연 32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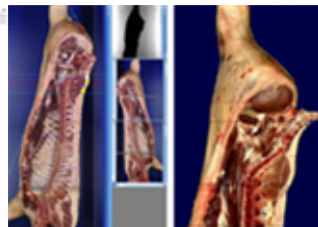
- (목표) 생산-유통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맛, 안전성, 친환경 등)에 맞춘 차별화된 한돈 제품 공급
- (기술품질) 소비자 입맛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 기술 도입과 다양한 가공방식의 육제품 개발·출시
 -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체계적 개량 및 품종 선발
 - * 구이에 적합한 폭이 넓은 삼겹살 생산 **요크셔·랜드레이스** + 근내지방도가 높은 두록 개량·선발 ⇒ **1등급 이상 출현율 76.7%** ※ 전국평균 67.8%
 - PRRS 저항성 씨돼지 정액 공급 및 농가별 항생제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 * 회원농가 무항생제 인증 18.8% / 생산단계 HACCP 인증 98.2%
 - 친환경 정책 차원으로 도입된 **저단백 양돈사료** 선제적 도입
 -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2차 가공품 개발 및 판매 확대
 - * 2차가공품 판매량(톤): ('21) 254 → ('22) 324 → **('23) 558 (72.2% 증가)**
- ▶ **'10년 전국 최초 '명품인증 1호' 한돈 선정 이후 '23년까지 14년 연속 '명품인증' 유지**
- (상생협력) 농가와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신기술 도입 비용을 조합에서 일부 분담하고 이익 공유 구조를 형성함.



돈육품질 피드백 시스템



유전체 분석



기계 도체 판정(VCS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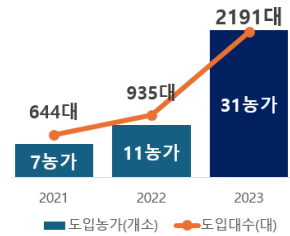


포크벨리 브랜드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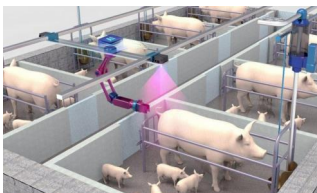
- 2015~2023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명품인증(농림축산식품부)
- 2005~2023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소비자시민모임)
-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돈육부문 대상 수상(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

- 인공지능 기반 돼지 산자수 자동기록 등 핵심기술 확보
- 분만사 모돈 정밀 관리 시스템 '딥아이즈' 판매 및 매출 증대
 - * ('20) 3.7억 원 → ('21) 8.2 → ('22) 26.2 → ('23) 40.5
- 분만사 모돈 정밀관리시스템 '딥아이즈(DeepEyes)' 보급
 - * ('21) 7농가(644대) → ('22) 11(935) → ('23) 31(2,191)



(주)엠트리센(대표 서만형): 서울 강남, 직원 총48명

- (목표) IoT와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로 모돈 관리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극대화와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
- (기술품질) 인공지능 기반의 모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현장 활용도 극대화
 - 연구개발 역량확보: (R&D) 전담인력 26명, (개발비) 30억원 소요
 - 모돈 분만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산자수 자동 기록' 기술 등 개발
 - 인공지능 기반 분만사 모돈 정밀 관리 시스템 『딥아이즈』 출시
 - * 국내 경쟁·유사 기술은 없으며, 덴마크의 F社 제품이 자국내에서만 판매
 - '21년 웹 플랫폼 및 서비스 시범 운용 및 평가
 - * 4개 농장 실증결과: 도입 전 MSY 28두 → 도입 후 30.6두 (성적 9.28%↑)
 - 딥아이즈 보급: ('21) 7농가(644대) → ('22) 11(935) → ('23) 31(2,191)
 - * '24. 8월 기준 27개 농가, 2,208대 보급
- (상생협력) 스마트 기술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동 성장 도모.



AI기반 번식 공정 스마트팜



시리즈 A 투자유치



덴마크 딥아이즈 실증 진행



'24 하노버 국제 축산 출품

인증(지정) 및 수상 실적

-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상 수상(고용노동부)
- 2023년도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 대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
- IR52 장영실상 2024년 제8주 수상제품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IV.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주요 시사점

- 대내외 여건에 따라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 기술의 도입과 함께 경영 효율성 제고 필요
 - 최신기술의 즉시 도입보다는 기초적 생산성 실현 후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별적 도입
 - * 예) 장원목장은 검정기록 효율화가 가능한 스마트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착유기 등과 같은 최신장비는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된 축산정책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의 현장 접목을 통해 대내외 수요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 * 예) 가축개량 관련 사업 + 유전자 분석 기술 ⇒ 한우사육기간 단축, 축산물 품질개선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환경위생 강화 기술 ⇒ 질병청정화, 폐사율 감소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협동조직화 + 제조기술 ⇒ 사료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등
- 축산업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 순환 방안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 체계 유지
 -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처리역량을 강화해왔으나, 경종·시설 농가의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
 - * 이용 농가의 가축분뇨액비 품질 신뢰도, 고령화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이용 편의성 저하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종·시설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 * 예로 조사료 생산 증대는 사료비 절감, 경축 순환 실현, 농지 활용도 제고, 그리고 경종농가 소득 증대 효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

□ 향후 계획

- 혁신사례집 발간 및 배포('25. 2월)
- 혁신사례 심층 분석 및 확산방안 마련
 - 농어업위 본회의 심의안건 상정('25. 3월 예정)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요약]

- (추진배경)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치유산업이 대두
 - 농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은 농산어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현황) 농업, 산림, 해양, 관광 등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치유 관련 정책이 시행 중
 - 개별 분야에서의 정책만 마련되어 있고,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해 치유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제한적
 - 개별 법률 간 기준 상이성으로 분야 간 협력이나 융합적 접근이 어렵고, 치유산업의 통합적인 발전에 한계
- (목표) 대국민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 추진전략 1 치유산업 기반구축**
 - ①분야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적 기반 강화, ②치유산업 특수분류체계 신설, ③치유산업 바우처 개발, ④분야 간 연계 플랫폼 구축
 - 추진전략 2 지역 맞춤형 치유산업 육성**
 - ①복합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②치유산업 광역화 모델제시
 - 추진전략 3 민간 중심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①민간 중심 모델 개발, ②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③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추진전략 4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①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②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③장기적 치유산업 육성 체계 정비
- (기대효과) 통합적 산업으로의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가치 증진, 문화·관광 자원의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창출



목 차

I. 추진 배경	169
II. 국내 치유 현황	170
III. 한계점	171
IV. 국외 사례	172
V. 추진과제	173
1. 치유산업 기반구축	174
2. 지역 맞춤형 치유산업 육성	177
3. 민간 중심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179
4.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180
VI. 기대효과	182
VII. 향후검토과제	183

I. 추진 배경

-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유(healing) 수요가 증가
 -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문제 증가
 - *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환 일 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의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보건복지부, 2022)
 - **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 우울감 경험률: ('10)12.4%→('19)10.2%→('21) 11.3%(보건복지부, 2022)
 -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 치유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긴장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이 대두
 - 치유 프로그램들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로 농산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
 - 농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 치유산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은 농산어촌 지역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가능

II. 국내 치유 현황

- 농업, 산림, 해양, 관광 등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치유 관련 정책 시행

분야	법적근거	내용
치유 농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3. 시행)	· (정의)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 (대상) 전 국민 대상 농작물 재배 및 농장 체험 등 제공 · (운영) 민간 농장 중심 운영 - 치유농업센터 17개소 조성 예정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개소 운영('24년 기준) · (효과) '22~'26년 생산유발효과 2,545억 원 - 연간 시장가치 ('13년) 1조 5,599억 → ('23년) 2조 3,900억 원
산림 치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6.8. 시행) * 산림치유지도사 도입('12.1)	· (정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 산림휴양법 제2조(정의), 산림치유법(제정 중) · (대상) 전 국민 대상 심신 회복 생활습관 개선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제공 · (운영) 정부민간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운영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8개소 운영('24년 기준) · (효과) 2023년 산림휴양 가치 연간 8조 4,000억 원 - 치유 1인당 지불의사 금액 35,010원('14년 기준)
해양 치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1.2. 시행)	· (정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서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해양치유자원법 제2조(정의) · (대상) 전 연령층 대상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체 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 (운영) 해양수산부지자체 주도 해양치유센터 조성(국비지방비 각 50% 투입) - '24년 완도 1개소 완공, 태안·울진 등 4개소 추가 조성 예정 · (효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치유 관광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2024.6. 제정 추진) *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함	· (정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치유관광산업법 발의) · (운영)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도 - 웰니스 관광지 77개소 선정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 운영 중 · (효과)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 6,510억 달러('22년 기준)
치유 음식	별도 법적 근거 없음	· (정의) 치유농업 자원을 조리, 음식, 식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 (운영) 건강 증진 및 면역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프로그램 제공 - 농촌진흥청: 건강 레시피 치유음식 35선 선정 - 국립산림치유원: 항산화·면역력 증진 치유식단 개발 - 완도: 해양치유 밥상 지정

Ⅲ. 한계점

① 거버넌스 협력체계 미비

- 각 분야 자원의 상호 보완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나,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미흡
 - 개별 분야에서의 정책만 마련되어 있고,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해 치유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제한적
- 복지 및 교육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치유 효과가 제한적으로 제공
 - 치유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 회복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괄하는 데 한계 발생

② 법적·제도적 한계

- 개별 법률 간 기준 상이성으로 분야 간 협력이나 융합적 접근이 어렵고, 치유산업의 통합적인 발전에 한계
- 치유관광 및 치유음식 분야에서 관련 법률 미비하고, 품질관리 및 인증 기준 부재로 산업 육성에 제약
-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적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 보장 미흡

③ 데이터 관리 및 효과검증 부재

- 치유산업 관련 자료나 통계 관리체계 부재로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에 어려움 발생
 - 부처 간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산업 간 시너지 창출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제한적

④ 재정적 지원 및 시장성 한계

-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모델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

IV. 국외 사례

- (부처협업) 부처 간 역할을 구분하여 자원 관리, 품질보증, 정책지원 등 협업 체계 구축
 - (네덜란드) 농업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케어팜(Care Farm)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 (영국) 1차 의료*와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치유 서비스 도입
 - * 보건사회복지부: 사회적 처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건 정책 관리
 - ** 환경식품농무부: 자연 자원을 활용한 Green Social Prescribing Program 지원
 - (일본)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마련
 - * 농림수산성: 농업 자원을 활용한 복지시설 및 일자리 마련 주도
 - ** 후생노동성: 취업지원제도와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 복지 확대
- (법적기반) 법률을 통해 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인증제도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독일) 연방주의 법률에 따라 치유단지인 쿠어오르트(Kurort)를 인증하고 관리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 법적으로 인증된 치유 시설만 "쿠어오르트(Kurort)"로 인정받아 운영 가능
- (민간참여)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치유산업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
 - (벨기에) 민간 단체와 농민 연맹이 협력하여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주도의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 (독일) 민간 협회가 쿠어오르트(Kurort) 인증과 품질관리를 담당
 - (네덜란드) 치유농업연맹이 민간 중심으로 치유농업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V. 추진과제

비 전

대국민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목 표

- ❖ 범부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치유산업 활성화
- ❖ 민·관 협력으로 자립 가능한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과제

추진 전략

1. 치유산업
기반구축

2. 지역 맞춤형
치유산업 육성

3. 민간 중심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4.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세부 과제

- ① 분야별 제도적 보완
- ② 치유산업 특수분류체계 신설
- ③ 치유산업 바우처 개발
- ④ 치유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

- ⑤ 복합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 ⑥ 치유산업 광역화 모델 제시

- ⑦ 민간 중심 모델 개발
- ⑧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 ⑨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 ⑩ 민·관·산·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⑪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 ⑫ 장기적 치유산업 육성 체계 정비

1 치유산업 기반구축

□ 분야별 제도적 보완 [참고자료1](#)

- (제도보완) 치유농업법, 산림휴양법, 해양치유자원법 보완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 강화
 - 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제도 및 효과검증, 치유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필요
 - 지역계획 수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전문인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 보수교육 조항 신설

□ 분야별 제도 보완 필요사항 제안

구분	필요 내용	신설 조항 위치(안)
치유농업	자격취득 이후 보수교육 시행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바우처 제도 구축	제17조(치유산업 서비스이용권 등)
	중앙부처 및 민간과 정책 및 연구개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정책 및 연구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림치유	자격취득 이후 보수교육 시행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시설, 서비스 품질 인증 관한 조항 제정	제32조(우수 산림치유 시설의 인증 등) 제32조의2(우수 산림치유서비스의 인증 등)
	지역 특색 치유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 제7호
	중앙부처 및 민간과 정책 및 연구개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정책 및 연구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양치유	연구개발 및 효과검증 등에 관한 조항 제정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등)
	자격취득 이후 보수교육 시행	제27조(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등)
	국가 자격제도 운영	제27조(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등)
	바우처 제도 구축	제31조의2(치유산업 서비스이용권 등)
	중앙부처 및 민간과 정책 및 연구개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정책 및 연구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의료연계기반) 기존 치유시설을 의료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치유산업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 관련 법률 간 연계 조항 검토
 - 의료 전문가(의사, 심리치료사 등) 활용 및 치유 숙박시설 인허가 등 제도적 사항 검토를 통해 의료와 치유 연계의 기반 마련

< 의료연계 해외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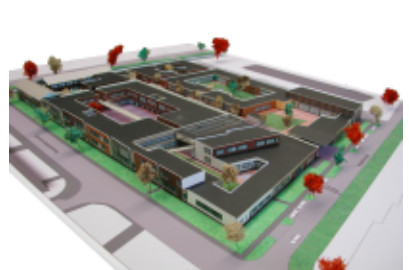
[사례 ① 독일 보리스호펜시]

- 독일 바이에른주 위치한 도시에서 온천과 산림치유를 결합한 자연치료 요법을 시작으로 치유도시로 성장
 - 온천치료, 심리치료, 예방적 건강 관리 등을 제공하며 **치유와 의료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 확립
- 치유시설과 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건강회복과 예방, 재활 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제공
 - 비의료적 치유활동(온천치료, 심리치료 등)과 의료 치료가 함께 제공되며, **의료보험에서 지원 가능**
 - 또한, 의사연맹과 산림전문가가 공동으로 설계한 산책코스를 질병의 종류나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전문강사 인솔 하에 프로그램 제공
- 치유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박업, 관광업, 치유 프로그램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



[사례 ②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치유와 치료가 결합된 **자율적인 생활 마을 모델**로, 의료와 치유를 통합하여 치매 환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치매인들은 슈퍼마켓, 문화센터, 극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텃밭 가꾸기, 산책하기 등의 일상생활 유지
 -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는 마을 내 슈퍼마켓 직원, 공원관리인 등으로 활동하며, 일반 요양시설과 달리 환자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여 마을에서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
-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다채로운 활동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치매 진행 속도가 늦춰지고, 시설 전후 입소 환자들의 복용 약물 수가 감소 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 개선



- (자격제도개선) 분야별 자격제도에서 공통된 과목 인정 방안 요구
 - 치유산업 인력 연계를 위한 공통 교육과목 및 자격제도 연계 기준 개발로 체계적·통합적 관리 가능

□ 치유산업 특수분류체계 신설 [참고자료2](#)

- 특수분류체계 구축으로 국가통계 데이터 확보 가능
 - 치유산업의 경제적 가치, 고용효과, 성장 추이 등 분석 및 정책 결정과 산업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
- 치유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특수분류 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산업 육성의 기반 자료* 마련 필요
 - * 전후방 연관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 기존 국가 산업 분류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新산업 코드 설계 등

□ 치유산업 바우처 개발

- 기존 건강·복지 바우처*에 치유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제공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
 - 바우처 사용 효과(바우처 사용 항목, 만족도 조사, 건강 개선 효과 등)를 데이터화하여 정책 개선 및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
- 지역 관광 바우처로 치유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체험패키지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순환 효과 기대

□ 치유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

- 치유산업 관련 정보, 자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단기) 각 분야에서 운영 중인 개별 플랫폼의 정보 및 데이터 연계
 - (장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운영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 추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산업 정책 방향 설정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2 지역 맞춤형 치유산업 육성

□ 복합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 (치유시설연계) 지역 내 농업,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을 연계하고, 공동 마케팅과 프로그램 교류를 포함한 치유관광 루트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 지역 특화 자원 활용을 통해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예시: 태안 인근 지역 치유산업 연계(안)]

- 태안 인근 지역의 해양치유센터와 자연휴양림, 코리아플라워파크 등을 연계



- (융복합프로그램적용) 농어촌 관광과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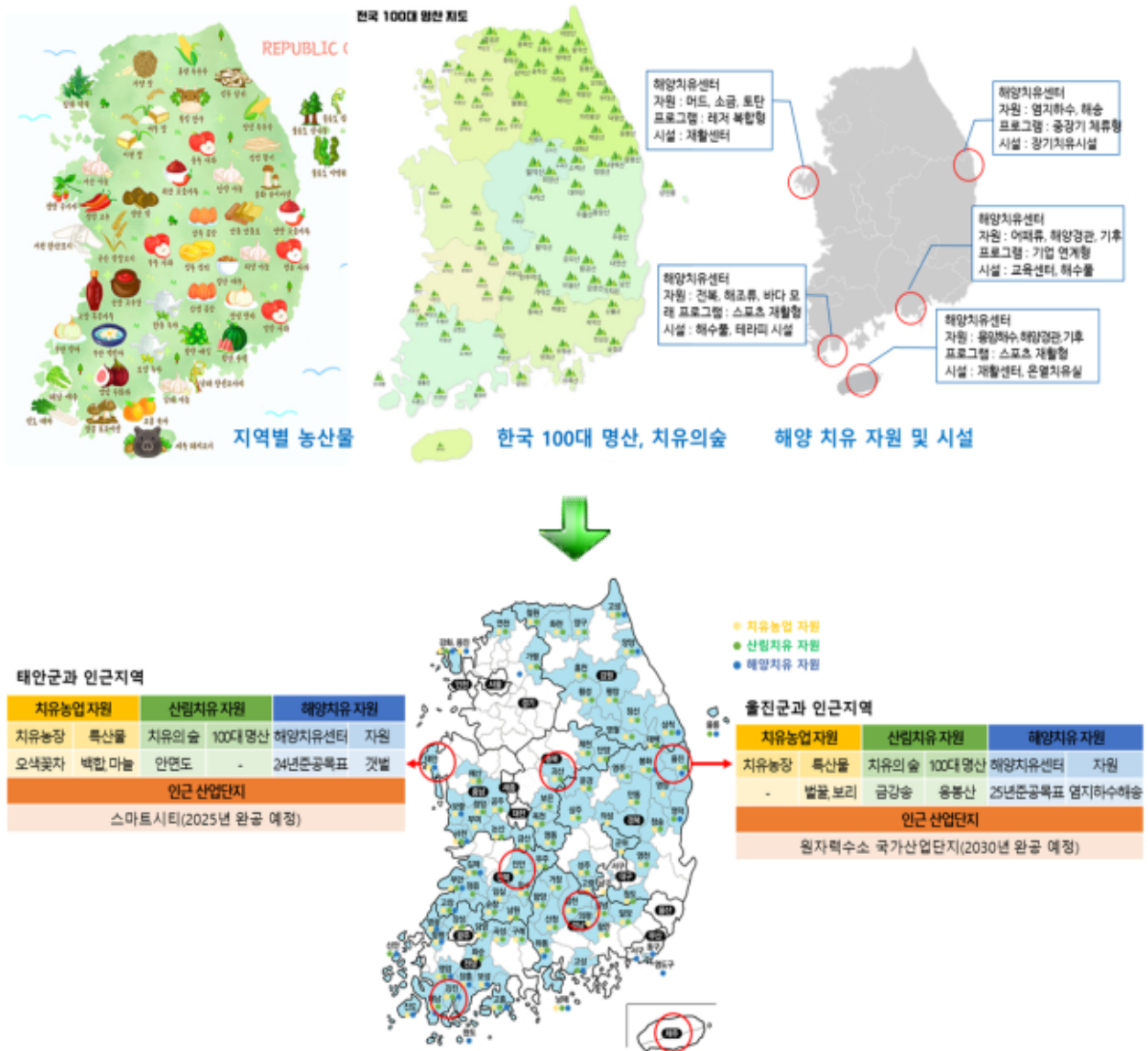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 체험이나 온천, 해양치유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역 가치 발전

□ 치유산업 광역화 모델 제시

- (거점지역)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어메니티와 치유 자원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지역 선정

- 치유 자원을 활용한 핵심 서비스 제공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예시: 농림해양 기반 치유 거점지역 제시]



- (광역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하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 치유산업 권역 개발
 - 지역 간 자원과 서비스 및 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상생 발전 도모
- * 동서트레일, 해안 트레일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유산업 권역 간 연계

- (범부처모델) 범부처 협업을 위한 재원 투입 모델 제시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광역화 치유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 분야별 치유 정책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

[연계 가능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약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
 - 행정안전부는 52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연계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해당 국가 보조사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계획 운영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기금 운영방향과 지원계획 수립

3 민간 중심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민간 중심 모델 개발

- 민간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진입장벽 완화 도모
 - 민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 기업을 인증하고,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한 치유산업 자원을 민간에 공유하여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 (인재육성) 지역 대학의 RISE 사업* 및 지역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매칭 지원
 - * RISE 사업은 지역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체계
 - 지역 대학은 전문 인력 양성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 기회 제공
- (취·창업 지원) 농산어촌에 정주하는 귀어·귀촌 청년, 은퇴 중장년층의 직업 재교육 및 취·창업 지원과 교육사업 연계
 - 지역 내 인력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반 강화

□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농산어촌 내 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유입 및 지역 홍보 강화
 -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농산어촌 체류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례: 금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 환경성질환 ‘아토피’ 전문 특화단지 조성 정주형 생활공동체 마을
 - 지역의 지형, 기후, 생태 등을 고려한 마을 배치 계획 수립으로 치유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
 - 초등학교와 자연치유센터 등에서 아토피 질환자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아토피 질환자 자연치유 도모
- 건강친화형 단독주택, 커뮤니티센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산촌지역 신규 생활거점 조성



- 워크케이션 환경을 치유산업과 결합하여 체류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득 증대 효과 기대
 - 관광, 숙박, 치유 프로그램을 통합한 패키지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

4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 (공공민간협력)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이 산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
 -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치유산업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운영을 이관하고, 공공은 민간의 지원하는 협력체계 유지
 -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인프라 제공 역할 수행
- (산학협력) 학계와 연구기관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산업화에 적용
 - 연구 성과가 지역 치유센터와 연결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마련

□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 (정부협업체) 치유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협업체 구성

*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등

- 부처별로 진행되는 치유산업 관련 사업을 조율하고 협력체계 강화
-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통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델 제시

- (R&D협력체계) 과학적 검증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기관과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의 활용을 위해 보건, 의료, 교육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및 공유 방안 마련
- 치유 효과와 건강 증진 간의 연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정책* 활용의 타당성 강화

* 국민건강증진기금,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활용 가능성을 확보

□ 장기적 치유산업 육성 체계 정비

- 치유산업의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통합법제정)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산업 전반의 일관된 정책과 관리체계 구축
- (진흥원설립) 치유산업의 연구개발 및 교육, 인증, 홍보 등 전문성을 강화할 전담 기관 설립 검토

VI. 기대효과

□ 통합적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 각 분야의 치유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치유농업, 산림과 해양을 결합한 복합 치유센터 등으로 융합된 서비스와 상품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치유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유입을 촉진

□ 부처간 협력 및 산업 연계 강화

- 다 부처 협력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치유 자원을 결합한 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분야 간 시너지를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과 발전 촉진

* 예) 치유관광과 치유음식의 결합을 통해 건강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가능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가치 증진

- 치유산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사회적 의료비와 국민 건강 관리 비용 절감 기대
- 농산어촌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과 도시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가적 균형 발전에 기여

□ 문화·관광 자원의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창출

- 치유산업을 통해 농산어촌의 자연 자원과 전통문화를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로 발전시켜 지역 이미지와 경제적 가치를 향상
- 지역의 전통 문화와 치유 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어촌을 독창적인 치유 관광지로 조성하여 부가가치 창출

VII. 향후검토과제

- 치유산업과 보건·복지 시스템 간 협력 가능성 검토 및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
 - (제도기반) 치유산업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 관련 법률 간 연계를 위한 검토
 - 치유시설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숙식제공시설 인허가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 제도적 사항 검토
 - 의료 전문가(의료진, 심리치료사 등)의 치유시설 내 활용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검토
 - (서비스품질) 치유와 의료 융합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체계적 기준 검토
 - 치유-의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표준화 기준 마련
 - 정부와 R&D 협의체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별 치유산업 거점 중심의 치유·보건 융합 치유산업 신모델 제시
 - (융합모델제시) 지역 치유시설을 거점으로 치유와 보건을 결합한 통합 모델 검토
 - 특정 치유시설을 중심으로 치유와 치료가 상호 보완되는 운영모델 개발
 - 지역별 치유자원을 의료와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시

참고 1

법률 보완 방안 제시(안)

내용	법률	현재 조항	필요 내용	신설 조항 위치
연구 개발	치유농업법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등 제8조 (연구개발·보급등) 제1항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호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연구개발 (효과검증 등)에 관한 조항 제정	-
	산림휴양법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호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
	해양치유 자원법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등) 제2항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호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제22조(해양치유관리 단의 설립·지정등)
전문 인력 양성	치유농업법	-	자격취득 이후 보수교육 시행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산림휴양법	-		제11조의2(산림치유 지도사)
	해양치유 자원법	-		제27조(해양치유 전문 인력의 자격 취득 등)
	치유농업법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항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가 자격제도 운영	-
	산림휴양법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
	해양치유 자원법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해양치유 전문 인력의 자격 취득 등)

인증 체계	치유농업법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시설, 서비스 품질 인증 관한 조항 제정	-
	산림휴양법	-		제32조(우수 산림치유 시설의 인증 등) 제32조의2(우수 산림 치유서비스의 인증 등)
	해양치유 자원법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제1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	치유농업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항 제1호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지역 특색 치유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에 관한 사항	-
	산림휴양법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 제7호
	해양치유 자원법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1항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제1항
지역 활용 방안	치유농업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항 제1호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지역 특색 치유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에 관한 사항	-
	산림휴양법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항 제7호
	해양치유 자원법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1항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책, 연구 개발 협의 체 구성	치유농업법	-	중앙부처 및 민간과 정책 및 연구개발 협업체계 구축운영 에관한 사항	제8조(정책 및 연구 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림휴양법	-		제6조의3(정책 및 연구 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양치유 자원법	-		제9조(정책 및 연구 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우 처 제도 구축	치유농업법	-	치유산업 연계 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사항 각 분야 자체 서비스이용권에 관 한 사항	제17조(치유산업 서 비스이용권 등)
	산림복지법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9조(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 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산림복지법 내 바우처 관련 조항 존재
	해양치유 자원법	-		제31조의2(치유산업 서비스이용권 등) - 취약계층 등에 해양 치유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2

치유산업 특수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치유산업 투입재 산업	재배 및 사육업	농산물 재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가축·반려동물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31	양계업
	치유산업 관련 상품 제조업	농림어업 식품 가공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892	차류 가공업
		임산물 식품 가공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2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41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축산 식품 가공업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장비·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08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3401	숨 및 실 염색가공업
		프로그램 관련 상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정보통신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기타 상품 제조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치유산업 관련 시설업	농장 시설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41226	조경 건설업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산림 시설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해양 시설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음식점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치유산업 관련 숙박업	숙박업	55101	호텔업
			55102	여관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항목명
핵심 치유산업	치유산업 서비스	농업 기반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산림 기반 서비스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해양 기반 서비스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관광 서비스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75210	여행사업
		기타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치유산업 연관 (파생) 산업	치유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물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산업단체 및 전문가 단체	94110	산업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공공기관	84222	농림수산물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치유산업 관련 서비스업	전문인력 훈련·교육 기관	85302	대학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컨설팅업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지원 서비스업	84222	농림수산물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75995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2024년 농어업위 규제정비 요청과제

2024. 12. 18.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4년 농어업위 규제 정비 요청과제(요약)

- (추진배경) 농어업위는 농어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농어업인 단체 및 청년농어업인 간담회를 추진
 - 농어업인 간담회 등에서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어 농어업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농어업인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타부처와 연계된 규제정비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정비 과제 발굴
 - 농어업인단체 간담회(24회), 권역별 청년농어업인 현장간담회(5회) 등 추진
 - 사실여부 파악, 타부처 연계, 부처의견수렴, 건의 타당성 등 건의사항 검토하여 규제 정비 사항 9건 발굴
 -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비사항은 직접 전달하고 타부처와 연계된 정비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관련 규제정비 4건, 농어업분야 신산업 육성 관련 규제정비 3건 및 기타 규제정비 2건
 -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규제정비 과제
 - ①버섯 폐배지 폐기물 제외, ②1년근 인삼 보험상품 개발, ③청창농 간 결혼으로 세대합가시 영농정착금 지원금 지속지원, ④사립수목원에 일반음식점 및 숙박 허용
 - 농어업 분야 신산업 육성 규제정비 과제
 - ①대마(헴프) 산업육성, ②수산폐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제도개선, ③유전자교정생물체(GEO)에 대한 규제완화
 - 기타 규제정비 과제
 - ①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제한 완화, ②식품원료를 사료원료로 활용시 규제완화
- (향후계획) 국조실(규제조정실)에 규제정비 요청과제 제출





목 차



I. 규제정비 요청과제 목록	195
II. 규제정비 요청사항	197
1. 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	197
2.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제한 완화	198
3. 1년근 인삼 대상 보험상품 개발	199
4.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0
5. 청창농의 결혼으로 세대합가 시 영농정착 지원금 지속지원	201
6.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대매(헴프) 규제 완화	202
7. 식품 원료의 사료원료 활용시 규제완화	203
8. 사립수목원의 일반음식점·숙박시설 설치 허용	204
9. 유전자교정생물체(GEO)에 대한 규제 법령 개정	205

I. 규제정비 요청과제 목록

□ 규제정비 요청과제 목록(9건)

제출처	과제명	주요내용
버섯단체 간담회	버섯배지 폐기물 제외	○(문제점) 버섯 재배용 배지는 톱밥, 옥수수, 대두피 등 식물성 원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폐기물로 분류 ○(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현행)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버섯폐배지가 포함 → (개정)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버섯폐배지를 삭제
농어업 분과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제한 완화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계절근로자)는 고용된 지역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근로지와 숙소가 동일 구역내로 한정되어 외국인 근로자 권리 침해 ○(개선방안)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간 지역이동 근무 자유화 및 출퇴근 등 편의성을 감안하여 근로지와 숙소가 접경 지역인 경우 허용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MOU체결 표준문안 등에 반영
인삼협회 간담회	1년근(묘삼) 인삼 보험상품 개발	○(문제점) 인삼 1년근은 뿌리가 약해 폭염 및 냉해 등에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개선방안) 1년근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또는 현재 재해보험에 1년근도 가입 가능하도록 조정
바이오 특위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점)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또는 사료, 비료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및 [별표4의 3] 참고 ○(개선방안)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와 [별표 4의 3] 및 사료관리법 관련 조항 개정
청년농 권역별 현장 간담회	청년창업농업인 간 결혼으로 세대합가시 영농정착지원금 지속지원	○(문제점) 결혼전 청년창업농업인(청창농)으로 선정되어 각각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은 청창농이 결혼할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소를 유지 ○(개선방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 * (현행) 결혼 전 청창농 대상자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개별 독립 경영주를 유지하거나 주소를 합가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원 가능 → (개정) 주소를 합가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주소지와 사업장의 지역 불일치)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도 지속 지원

제출처	과제명	주요내용
농어업 분과위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마(헴프) 규제 완화	○(문제점) 현재 대마(헴프)는 법적 제약으로 생산 및 활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헴프규제특구자유지역 사업 종료에 따른 연구 중단 문제 ○(개선방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헴프에 대한 규제 예외규정 신설, 규제 특구자유위원회에서 기간연장 평가 결정(3년가능)
축산TF	식품 원료의 사료원료 활용 시 규제완화	○(문제점) 식품원료가 사료원료로 사용될 경우 별도의 사료품목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요구되어 중복규제 문제 발생 ○(개선방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절차 면제 * (현행) 사료품목 등록의 추가 절차 필요 → (개정) 식품원료 사용시 사료 품목 등록 의무설정 면제 규정 추가
산림특위	사립수목원의 일반음식점, 숙박 시설 설치 허용	○(문제점) 수목원에서 일반음식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자 연휴양림, 관광농원 등으로 추가 허가를 받아 일반음식 및 숙박 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1에 허용가능 시설 추가 * (현행)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임산물판매장, 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 (개정)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추가
바이오 특위	유전자교정 생물체(GEO)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점)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구분하지 않고 위해성 심사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개발, 실험시 동일한 규제 적용 ○(개선방안)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GMO와 GEO 구분되지 않음 → (개정) GMO와 GEO 정의 구분, GEO의 경우 위해성 심사 면제규정 신설, GEO관련 개발 및 실험관련 별도 조항 신설

Ⅱ. 규제정비 요청사항

1 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

○ (현황)

- 버섯 재배용 배지는 톱밥, 옥수수, 대두피 등 식물성 원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섯 재배 후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운반 등의 절차준수

○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 (문제점)

- 버섯재배 농가에서 식물성 원료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 재배용 배지는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분류

* 비료 또는 사료로 현재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폐기물처리 절차(비용 발생 등)에 따라 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함

- 이에따라 버섯 폐배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절차 준수 등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하여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처리절차가 번거로워 버섯농가의 부담

○ (개선방안)

-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버섯폐배지 포함
- (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버섯폐배지 제외

○ (기대효과)

- 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식물성 원료로 구성된 버섯 폐배지를 비료나 사료, 연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 버섯농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 감소 및 절차상 번거로움 해소

2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제한 완화

○ (현황)

-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과 MOU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운영
-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고용주가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비는 급여에서 공제
 - * 단, 고용주가 숙박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상한(근로자 급여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이 있어 과도하게 청구할 수 없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근무지가 고용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음

○ (애로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거지 보다 저렴한 주거지로의 이동 및 행정구역 상 인접지역으로의 이동 곤란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리 침해
- 고용주가 행정구역이 다른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도 지역을 이동해서 근무할 수 없어 고용주의 고용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 (개선방안)

-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간 MOU 체결시 표준문안에 주거지 이동자유(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허용 및 동일 고용주의 행정구역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 문안 포함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 주거 선택의 자유 보장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3

1년근(묘삼) 인삼 대상 보험상품 개발

○ (현황)

- 인삼은 직파 인삼(종자 파종과 묘종 재배-수확지가 한 밭), 이식 인삼(종자 파종과 묘종 재배-수확지가 다른 밭)으로 구분됨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1년근 인삼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인삼 생산: ①예정지 관리, ②파종 또는 이식, ③해가림 설치, ④생육 관리, ⑤수확, ⑥수확 후 관리

○ (관련규정)「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애로사항)

- 1년근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저년근(해당 연근)은 부리가 약해 폭염·장마 및 냉해 등에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을 시 향후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농가 손실이 큼
-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큼

○ (개선방안)

- (현행) 2년근 이상의 인삼이 재해와 화재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보장
- (개정) 1년근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 (기대효과)

-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1년근 인삼 피해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바, 농가 소득 보존 및 생산성 안정 기대

○(현황)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물부산물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상품(소재)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요성 증대

- 일본, 미국 등 바이오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품의 이용이나 가공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문제점) 현행 국내법상 ‘수산물 가공시 발생하는 수산물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또는 사료, 비료(퇴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제4조의제2항 관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 2제3항 관련)"/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수산물부산물의 다양한 분야의 재활용이나 자원화를 위한 기술 혁신·개발은 여러 산업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나, 국내 법적 규제로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상업화 등에 장애*로 작용

- * 자원 낭비, 산업혁신 저해, 경제적 손실, 국제적 경쟁력 저하 요인 등으로 작용

○(개선방안) 수산물부산물을 폐기물, 사료, 비료 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폐기물 시행규칙 [별표 4의 2]와 [별표 4의 3] 및 사료관리법*개정 추진

- * 현재 참치혈합육(dark bloody muscle)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사료 활용이 가능하나 사료관리법(개별법) 상의 단미사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 불가

○(기대효과) 수산물 가공시 발생하는 수산물부산물을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부가가치 소재로 개발하여 상품화할 경우, 부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은 물론, 기능성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 가능

○ (현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지급
- 지역이 다른 청년창업 농업인이 결혼하여 주소를 합가할 경우 기존의 농업경영체를 유지하여도 영농정착 지원금 중단

○ (관련규정)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지원기준)

○ (애로사항)

- 지역이 다른 청창농이 결혼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결혼 후 세대 합가하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각자 별도의 주소를 유지**
-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주택청약, 전세 자금 등)
- 주소를 합가할 경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농지 등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해야하여 별도의 농지 마련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애로사항으로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 (현행) 부부가 주소지를 합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농지 등을 마련하여 각각 농업 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
- (개정) 부부가 주소지를 합가하고 이전된 주소지와 다른 지역(결혼전)의 사업장을 계속 경영 하더라도 각각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결혼 및 가정생활 안정 지원
- 가정생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청년농업인 결혼 장려 효과 및 농촌 정착률 증대
- 지속적인 농업 경영활동 촉진 및 농촌 활성화
- 부부간 개별 지원으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 가능하여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현황)

- (규제내용)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이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나, 이는 의료용 대마에 국한. 산업용 대마(헴프)는 환각 성분(THC) 함량이 극히 낮음에도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산업용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 및 안동헴프규제자유특구지역 사업 기간 연도말 종료 예정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점)

- (불편사항) 섬유소재, 종자유, 식품 등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마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생산 및 활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
 - * 해외의 경우 산업용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단, 철저한 재배관리 실시)
- (애로사항) 헴프 이용에 관한 연구나 제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연구 허가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신산업 창출에 제약이 발생
2020년에 지정된 헴프규제자유특구지역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연구중단 및 투입비용 (400억원) 매몰

○(개선방안)

- **(헴프 규제 완화)** 산업용 대마는 THC 함량을 기준으로 마리화나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산업용 대마(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재배 허가 제도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자유특구지역)** 헴프규제자유특구지역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제품개발 및 연구 지속 추진

○(기대 효과)

- (신산업 창출) 헴프 산업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섬유, 종자유,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 가능
- (경제적 성장) 국제적인 헴프 산업 성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 가능

○(현황)

- (규제내용) 현행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원료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료공정을 설정해야 함. 이로 인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 원료가 사료 원료로 사용될 때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문제점)

- (불편사항) 식품 원료는 이미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료 원료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료 공정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사료 제조업체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 식품원료의 사료공정 추가 설정 면제

- * 개정 대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및 제5조의2(제조·수입·판매·공급 또는 사용 금지).
 - * 개정 내용: 식품 원료가 이미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어 식품공전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료를 사료 원료로 단독 유통·판매 시 별도의 사료 공정 설정 없이 식품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 제8조 개정: 사료 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품 원료의 공정 설정 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추가
 - ▶ 제5조의2(제2항) 개정: 식품 원료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공정 설정 없이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함.
-

○(기대효과)

- (중복 규제 완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식품 원료를 사료로 사용할 때 별도의 사료공정 설정을 면제함으로써, 사료 제조업체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식품 원료의 사료 시장(특히 펫푸드) 진입 용이

○(현황) 현행 「수목원정원법」 상 수목원에서 일반음식점(주류 가능)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류판매는 불가하며, 대중 숙박시설 설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숙박은 수목원 설치 목적(전시·학술)에 한하여 가능

-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상 ‘편의시설’ 항목에 일반음식점 미규정
- 「수목원정원법」 제2조(정의)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정의

○(문제점) 수목원에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주류를 포함한 음식 제공 또는 대중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현행법 상 수목원 내에서는 불가하므로 수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등으로 신청해야 함

-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정 신청 절차 필요(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신청 절차 필요

○(개선방안) 자연휴양림과 같이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상 ‘편의시설’ 항목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현행)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 (개선) 일반음식점 추가 (일반음식점은 사립수목원에 한하여 600m² 이하로 시설)
- * 자연휴양림의 일반음식점 시설 연면적 기준 준용(「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목)

○(기대효과) 수목원 편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로 수목원 경영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

○(현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음
-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여 변형한 생물체
- * **유전자교정생물체(GEO):**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CRISPER CAS9)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하여 DNA를 변형시킨 생물체
- GEO는 생물체(작물) 자체의 DNA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생물체로, 실제 자연적 돌연변이와 구분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GEO는 GMO와 달리 규율하고 있음
 - * (영국) GEO 작물을 GMO 작물과 분리하여「유전자기술(정밀육종)법」을 제정(2023. 3. 23.)하여 GEO로 개발된 식물과 척추동물(인간 제외)을 GMO의 환경·상업 규제에서 제외
 - * (EU) 「신육종기술(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식물에 대한 규정」을 발표(2023. 7월)하여 NGT1(New Genomic Techniques type 1 = GEO) 작물은 일반 작물과 동일 취급

○(문제점)

- GEO는 GMO와 명확히 구분되는 기술로, 자연적 돌연변이에 의한 DNA 변형과 구분할 수 없어 외부 환경 및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음
-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중국·유럽 등에서는 GEO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연구가 진행 중
- 현행 국내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GEO 작물도 GMO 작물로 취급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시의 규제(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안전관리)등을 적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내 2의2.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신설,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한 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하여 정의
- 동법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관련, “유전자교정생물체”로 인정되는 경우 위해성 심사 면제

- 동법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관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개발·실험 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의 육종을 가속화,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위기와 생산성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그린·레드·화이트바이오 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R&D 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식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판매를 통한 농식품 수출 1천억 달러 육성 기반 마련

※자료출처

1.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전자편집기술 발전과 국내 역량, 그리고 규제 방향, BioiNwatch(BioiN+Issue+watch) 23-85, 2023. 12. 19.
2. 국회입법조사처, “유전자편집작물 관련 안전규제 변화 동향과 전망”, NARS 이슈와 논점 제 2190호, 2024. 7. 1.
3. 김성규, “유전자교정 작물은 유전자변형 작물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cafrp/3269851487>)
4. 우태민, 영국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검토, KBCH 브리핑 2023-10, 2023. 5. 22.
5. 조선일보, [유전자가위 혁명]⑧ 해외로 밀려나는 韓 바이오 기업 “유전자 교정, 규제 풀어야 기술 우위 지켜”, 2024. 9. 5.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 2024. 9. 2.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최수진의의원 대표발의), 2024. 9. 20.
8.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의원 대표발의), 2024. 9. 10.